



2021 육아정책 심포지엄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2021. 5. 27.(목). 14:00~16:0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zoom 회의 (온/오프 병행)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국회의원 강득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 2021년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엄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 일 시 | 2021. 5. 27(목), 14:00 ~ 15:5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일정표 |

사회: 권미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시간	세부일정
14:00	개회
14:00~14:10	인사말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강득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14:10~14:50	발표 1. 미래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2.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종합토론	
14:50~15:30	토론 좌장 : 권미경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최민수 이사장 (코리아통합연구원) • 박태준 평화교육담당사무관 (경기도교육청) • 조성은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혜경 사무총장 (어린이어깨동무)
15:30~15:45	질의응답
15:45~15:50	폐회

Contents | 2021년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엄

| 환 영 사 |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i
강득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iii

| 주제발표 1 | 미래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1
--------------------	---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 (육아정책연구소)

| 주제발표 2 |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토 론 |

최민수 이사장 (코리아통합연구원)	67
박태준 평화교육담당사무관 (경기도교육청)	74
조성은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8
최혜경 사무총장 (어린이어깨동무)	85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육아지원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2021년에는 경영목표 중 하나인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를 대주제로 총 4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미래교육연구팀에서 국제적 상황과 통일 등의 한반도 지형 변화에 대비한 미래대응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심포지엄의 자리가 우리 사회가 모두 남북한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고민하고 논의하는 정책들이 실현되어 남북한 어린이들의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통일 한반도에서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육아정책

연구소의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이윤진 선임연구위원님,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토론을 맡아주신 최민수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장님, 박태준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 담당사무관,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좌장을 맡아주신 권미경 연구위원님과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2021년 1차 육아정책심포지움인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토론회>에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님,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 토론을 맡아주신 최민수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장님, 박태준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담당사무관님,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언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누려야 할 평화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분단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도 분단 상황에 어느덧 익숙함을 느끼며 일상생활 속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역시 떨어지

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기부터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온 국민이 어려서부터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남북 아이들이 겪는 교육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진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회의원 강 득 구

| 주제발표 1 |

미래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박 창 현 미래교육연구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미래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¹⁾

박 창 현 미래교육연구팀장 (육아정책연구소)

1

들어가며

2019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이후, 여러 대북 정책들이 굴곡은 있지만, 여전히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북한과의 협력과 번영 정책의 핵심은 ‘평화’이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도 평화를 중심으로 통일 한반도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탁아소), 교육의 방향 등을 새롭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어린이집 3-6년,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 2-3년, 대학교 4-6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무교육기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이며,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세, 4세, 5세 모든 유아는 무상으로 교육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교육 관련 부서에서 만든 누리과정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으로 볼 때 사실상 12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의 교육체제는 1999년 어린이보육교양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정, 2011년 보통교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정으로 탁아소 4년, 유치원 2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전문대학 2-3년, 단과대학 3-4년, 일반대학

1) 박창현, 김나영, 김지수, 최민수, 김정현(2020).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중, 평화통일교육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과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음. 세부 내용은 보고서 참고 요망.

4-6년으로 이루어져 있다(최민수, 1998; 한만길, 2014). 노동신문(2012)에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추진을 법으로 정하여 2013년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교롭게도 남한과 북한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추구하고 있는 12년제 의무교육을 2013년을 기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만 5세 유치원 높은 반은 의무교육이며, 교과서가 존재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통합교육에 기반한 그림책 형식의 새로운 교과서를 기반으로 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다. 북한의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계획안을 쓰고, 재교육과 평가도 받는다. 자격과 승급제도도 존재한다(박창현 외, 2020). 또한 북한의 탁아소는 100인 이상의 규모일 경우, 의사 선생님이 배치되고,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반을 나누고 발달에 알맞은 보육을 추구하고 있다. 동, 군마다 유치원과 탁아소가 있고 100% 국립 유치원, 국립 탁아소이다(박창현 외, 2020). 남한과 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은 다르지만, 유사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자가 유아를 바라보는 마음은 같으며 동질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장벽에 갇혀 분단 후 60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통일에 대한 노래를 천천히 잊어가고 있다. 우리가 꿈꾸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와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는 미래세대 통일 한반도, 통일 한국을 실현해나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통일대비 남북 간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의 통합 및 협력을 기대한다면, 정보와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대비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그동안 정체되어 답론조차 열려있지 않은 유아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학술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90년대 이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멈추어져 있다. 특히 누리과정 시대에 접어들어 유아교육과정의 중점이 바뀌면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현격히 줄어들었고, ‘통일’이라는 용어를 꺼내는 것조차도 어색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통일교육지원법도 초·중등교육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구조는 통합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황과 제도를 비교해보고, 통일대비 유아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성, 교육과정, 교사교육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아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법제도 개편,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북한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법제도 비교

1. 남북한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

북한 영유아(0~4세) 인구는 2008년 현재(통계청, 2019)²⁾ 약 170만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현재, 탁아소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통계를 보면,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였고, 탁아소와 유치원의 시설 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³⁾ 36~59개월 미만 영유아의 72.7%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이러한 등록률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12년 9월 25일 제12차 최고인민회의의 6차 세션에서 채택된 법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 시스템에서 영유아 교육은 탁아소 5년, 유치원 2년 과정⁴⁾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년간의 보편적인 의무교육은 1년의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해당된다. 유치원을 통해 아동의 소학교 진학에 대한 준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조직적인 학습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유아교육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문해-수리력 정상 수준의 아동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아

2) 통계청(2019).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p.234.

3) UNICEF(20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p.110.

4)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00> 북한정보 포털 번역 참고

동 중에서는 32.0%의 아동이 정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반면, 유아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교육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지역적 유아교육 참여의 격차를 줄여나갈 지원이 무엇보다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유아교육·보육은 보건성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와 교육성에서 관할하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체제 하에 운영되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만 4세를 기점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에 등원하는 연령이 나뉜다. 탁아소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반이 편성되며, 유치원은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원은 탁아소에서는 보육원, 유치원에서는 교양원으로 통칭되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탁아소는 놀이 위주의 활동 중심 교육,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지적교육 및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탁아소와 유치원 비교

	탁아소	유치원
연령	만 4세 미만	만 4세 이상
운영 형태	• 시, 군, 구, 동, 읍, 지역, 리 유치원이 있으며, 군과 동 수준에는 유치원이 하나씩 있음. • 기업소/공장/농장 탁아소 • 기타⁵⁾: 1) 주 탁아소: 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데려감. 2) 월 탁아소: 1개월간 맡기는 장기간 집단생활⁶⁾	• 군부대 유치원 • 시, 군, 구, 동, 읍, 지역, 리 유치원이 있으며, 군과 동 수준에는 유치원이 하나씩 있음. • 기업소/공장 유치원 • 농장 유치원
설치	• 북한 전역의 공장, 기업소, 농장에 설치하여 근로·여성에 편의 제공	• 북한 전역에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 제공 • 인원수 적을 때는 탁아, 유치원 집에서 할 수 있음(그러나 개인 또는 사립 유치원은 불법임).

5) 주, 월 탁아소는 예술가 그룹 등 일부 계층이 활용하기 적합하고, 경제가 어려워진후, 대부분의 주, 월 탁아소는 애육원 등 고아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음. 주, 월 탁아소는 평양 근처에 2-3군데 이상 있는데, 평양시민들이 국가행사에 동원될 일이 많고, 행사를 자주하게 되면, 그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음. 월, 주탁아소에서는 우유도 먹이고, 점심도 줌.

6) Lee Y.J. Research on child care system of North Korea and issue on women. J Early Child Educ Educare Welf 2006;10:53-77.

	탁아소	유치원
반 구성	- 영유아 발달단계에 근거하여 분리 - 젖먹이반(1-6개월) - 젖떼기반(7-18개월) - 교양반(19-36개월) - 유치원 준비반(37-48개월)	2년제 - 낮은반 1년(만 5세) - 높은반 1년(만 4세)
설립목적	탁아소는 유치원을 가기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임.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 기관임.
주무부처	보건성	교육성
전달체계	- 중앙: 보건성 - 지방: 시·도·군 보건부서(인민위 산하) - 리 단위(농촌, 농장): 군 경영위원회 산하 농촌위원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 중앙: 교육성 (교육상) - 지방: 교육부 (교육부장)
	근로단체조직, 당조직 연합, 지원, 실행하는 구조	
예산지원	- 중앙의 유치원, 탁아소: 중앙예산(학용품 필기도구 등) - 시·도·군의 유치원, 탁아소: 지방예산 - 농촌 협동농장 유치원, 탁아소: 공동소비자금은 없음. 생산물로 쓰긴 하나, 모두 정부가 지원함.	
	급식비는 주고, 군에서 생산한 토대로 준다. (부기, 경리)	
교직원	- 보육원, - 보육원 자격: 중학교 졸업자, 보육원 양성소를 거침	- 교양원 - 교양원 자격: 교원대학교(3년제) 졸업, 교원 양성소 거침. 통신대학, 교원·사범대학의 야간학부 졸업 후 교원자격검정 시험 통과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보건성 규칙 제1호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년 2월 1일 제정)에 근거 발육 및 양육 대책 수립 질병 예방, 위생적 습성 함양(제3조)⁷⁾ (Lee YJ, Seo MH, Kim SH, Park YJ). - 모유, 이유식, 밥 먹이기, 용변 가리기, 언어교육(생후 1년 6개월-2년), 보행법, 노래, 유희	- 정치사상교육(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린 시절 이야기) 15% - 지적교육(우리말, 셈세기, 관찰) 30% - 정서교육(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20% - 체육교육 13% - 기타(놀이) 22%⁸⁾ - 그네, 놀이. 조각품

7) Lee Y.J, Seo M.H, Kim S.H, Park Y.J. A study on the child rearing in North Korea preparing for reunification.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2.

8) Choi M.S. A study on curriculum contents of kindergarten of North Korea. J Korea Open Assoc Early Child Edu 1996;1:203-228.

2. 남북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

북한에서는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법령을 「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령으로는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통교육법», 「장애자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및 아동복지와 관련한 법제도라 할 수 있다. 각 법령 별 주요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주체사상과 이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보육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보통교육법」은 유치원 학제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아동에 대한 무료의무교육과 무상치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분야, 교육 및 보건분야, 가정생활, 사법분야 등 사회 전반의 범분야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녀성권리보장법」은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출산의 자유, 임신부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북한에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교육과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법령의 주요 조항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도 통합에 대한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무상유아교육 및 보육의 범위 설정 문제다. 북한의 「보통교육법」은 중등일반교육을 무료라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키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 유보통합에 관한 이슈다. 북한은 「아동보육교양법」으로 법제도가 단일화되어 있으나 시설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관리부처 법령, 기관, 교사기준에 대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관련 법령에는 조항이 추상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교육보육 관련 법제도 간에는 기준, 목표, 특징, 주요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교육보육 관련한 각 법제도의 특징 및 강조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통일 현실을 반영하는 법령 및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박창현 외, 2020)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유아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⁹⁾. 해당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평화·통일교육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시행 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1.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통일대비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화·통일교육은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없어 현재 대체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 교육의 철학과 목표, 방향성들을 확립하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여 포용과 사랑의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연구보고서

참조(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30&editMode=ADD&board_idx=41408&manage_idx=102&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_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ext=%ED%86%B5%EC%9D%BC&rowCount=10&viewPage=1)

〈표 2〉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현황과 방향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확립, 방향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 담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평화·통일교육의 유아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의 반영은 미흡한 편임.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남북의 문화 이해 및 소통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개별 교실 상황이나 교사 관심에 따라 평화, 통일 교육 여부가 결정해야 함. •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일시적, 단절적 교육에 그치고 있음. •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이 없으므로, 평화통일 교육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통일교육은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음. • 현행 ‘통일교육지원법’(8조)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을 언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통일교육이 방치되고 있음.
↓
개선방안(정책제언)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보육 철학 및 교육의 목적과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등 교육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제8조에는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남북한의 기관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함. •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 • 남북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구 활성화가 필요 • 북한에 대한 대상화, 적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디톡스가 우선 필요 • 고정되고 단일한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아닌 유동적이고 다채로운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함. • 세계와 연관된 인재상을 설정하고, 질서, 평화유지방식, 갈등극복전략, 영유아인권, 교육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통일교육의 방향성 또한 전체 플랜 속에서 영유아교육자들의 사회적 합의, 숙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 필요 • 교육의 방향은 세계시민교육, 배려와 협력, 공존과 존중, 타인이해 및 평화이해, 포용과 사랑의 방향이어야 함.

2. 유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아 평화·통일교육 및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누리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관련 활동 자료들도 부족할 실정으로 실제 교육과정 실행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 평화공동체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도록 정확한 정부 지침과 정책 문서가 필요하며, 현장에서는 평화감수성 내면화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3〉 유아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 평화·통일교육은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더불어 사는 사람’, 5개 영역 중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나 생활주제 및 교육적 접근에 대한 오해로 평화, 통일 관련 교육은 실제 교육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함. • 초등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하며 북한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사회관계에서 통일교육을 담아내고자 하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가주의적 한계가 명료함. 북한에 대한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감각을 고루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교육과정 구성이 괴리되어 있음. • 세계시민이라는 지향과 국민국가 지향 사이에서 유아교육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음. • 현재 통일교육과 관련한 활동자료는 많지 않음. •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교과목식으로 편성된 교육과정과 대한민국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상반된 철학과 내용이 상충될 것으로 예상됨.
↓
개선방안(정책제언)
• 평화 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의 내용이 누리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함. •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과 연계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공동점과 차이점),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상호존중, 소통, 배려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누리과정의 사회생활 영역을 확대 개편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의식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음.

-
-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개념보다는 보편적인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함. 유치원 과정부터 체계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평화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 마련이 필요함,
 - 평화와 통일이라는 개념의 ‘교육적 함의’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
 - 누리과정에 평화 감수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관련 핵심역량 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정책 문서 보완 필요
 - 북한유치원의 문서화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실행되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자료 분석이 요구됨.
-

3.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유아 교육과정 관련 변화 및 대처 방안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의 항목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예상되는 남북한 교육과정 관련 변화 및 대처 방안

-
-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영역은 유사하나, 교육신념과 가치 및 교육목적의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됨.
 -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체제상 통합은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과정은 미래 대비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평화교육을 유아기부터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각각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일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공통내용들을 교육과정 운영에 부분적으로 포함하게 됨.
 -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모여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있음. 한 번에 교육과정을 통합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 북한에서의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 이론 도입은 남북한 공통의 유아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
 -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유아교육과정 통합의 예를 다양화할 필요 있음. 통일 이후, 북한 거주 영유아 대상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음.
-

4. 유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제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교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자료 등이 부족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에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교육과정을 대면으로 실시하고, 평화·통일교육 역량 모델 개발과 민주시민교육 학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필수교과로 평화·통일교육을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통합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 간 왕래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직교사들을 위해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 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유아 평화·통일교육 교사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 교사양성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은 형식적이며, 단위 특강으로 대부분 시행됨. • 임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회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과 현장의 과중한 노동으로 통일, 평화 등의 주제를 교사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임. •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북한 유아교육이나 평화통일 교육 관련 교과서가 부재함. • 유아교사를 포함하여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수강하고 있음. 이런 경우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강좌가 구성되므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장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함. •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풀어나갈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교사이해자료, 교사 연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
개선방안(정책제언)
• 양성과정에서 사이버를 통한 교육보다는 활발한 토의 및 남북 교육자료의 직접 경험, 유아교육기관 참관, 현장전문가 특강 및 질의응답 등의 대면교육을 진행할 필요 있음. •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편적 평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 역

문제점

- 량강화 프로그램과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교육이 지속되어야 함.
- 교사들이 일상에서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교육내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을 접목시킨 평화교육 연수와 평화·통일교육의 대한 교사교육이 필요함.
 - 교구와 교재 보급,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사들이 먼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함.
 - 어린이집, 유치중고의 교사양성과정 및 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함.
 -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내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전문강사 교육대상에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도 포함시킬 필요 있음.
 - 민주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내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학습 모형을 개발 해야 함.
 - 평화·통일교육 역량의 개념 설정이 필요함.
 - 철학, 인문학 등 남한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약화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강화를 통해 탈북자, 북한 등 타자에 대한 교사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선제될 필요
 - 주무부서의 통합과 자원 확보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 확보
 - 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간 왕래를 활성화 필요
 -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이 요구됨.

5.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와 대처방안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영유아교사의 자격과 양성 제도, 양성 기간이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교사제도 변화와 대처 방안

동의 정도

- 북한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은 남한 유아교육과로, 북한 보육원을 양성하는 ‘보육원 양성소’는 남한 보육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양성기간 및 자격에서 남북의 제도가 상이함. 또한 남한의 경우에는 교사양성과정이 유아교육과, 보육과, 보육교사교육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 혼재되어 있고, 양성 기간도 달라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요구됨.

6.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와 교육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국정과제와의 연계의 측면에서 관심 자체가 협소하고 특정 지역 중심의 일회성 행사 형태로 연계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평화·통일교육은 시민사회나 국정과제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로 관련 주제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고,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7〉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정과제연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평화, 통일은 당면한 국가적 주제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관심이 협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평화, 통일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빈약함. •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평화 통일 주제는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 중 하나인 통일국민협약의 구성 및 모색 과정에서 다양한 평화 통일교육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중성이 떨어짐. •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나 축제가 소규모로 진행되어 행사성, 일회성 참여로 그치고 있음.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과 달리 유아교육영역은 시민사회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시민사회단체 역시 유아교육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함.
↓
개선방안(정책제언)
• 국가적 과제로서의 평화·통일교육에 부합되도록, 유아교육에서 하나의 주제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을 초월한 교육내용으로서 연구되고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함. •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7.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 통합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제도의 일원화보다 남북한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합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북한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연령을 기준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통합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들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남북한 기관운영 및 학제 비교 연구, 통합 모델 연구, 용어의 통일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8〉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 통합

- 통일 초기에는 남북의 교육·보육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제도를 그대로 존중 해주면서 통합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영유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 유아 교육·보육 행정체계의 통합·정비
- 통일 전 남북한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비교연구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임.
- 영유아교육기관 해당 연령, 의무교육 여부 등에 대한 단계적 계획 수립을 해야 함.
- 남북한 기관운영 체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통합 모델 마련이 필요함.
- 학제와 용어의 통일 및 조율을 위한 연구가 필요.

4

우리가 해야 할 일

1.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한 유아 단계 포함

첫째,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유아 단계가 빠져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법 개정이므로, 유치원에만 해당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교육은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을 언급하고 있지 않

으며,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거의 없어 현재 대체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 교육의 철학과 목표, 방향성들을 확립하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2. 유아교육·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포용 정책과 연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 필요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은 모두 정치교육과 관련이 있는데, 학문적 개념과 범위가 확립되지 않은 이유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통일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다양성과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 평화·통일교육 등도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관해, 태도와 이해수준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함께 고민하며, 유아교사의 정치교육을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치교육’이라는 담론으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장이 필요하다.

3. 평화통일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한 누리과정 개정

첫째, 누리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관련 활동 자료들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부처 및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실제 누리과정 실행시 누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누리과정에 평화감수성을 가진 민주시민교육, 평화공동체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누리과정을 개정하여 세계시민교육, 민주정치교육, 공동체 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있도록 정확한

정부 지침과 정책 문서가 필요하다.

넷째, 현장에서는 평화 감수성 내면화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통일대비 예상 시나리오 구축, 체제개편 고려

첫째, 통일이 된다 해도 체제상 통합은 어려울 것이므로, 교육과정은 미래대비교육,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평화교육을 유아기부터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직후에는 남북한 각각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일 전부터 논의되어왔던 공통내용들을 교육과정 운영에 부분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가 모여 통일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영역은 유사하나, 교육신념과 가치 및 교육목적의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 번에 교육과정을 통합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점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한에서의 놀이 중심의 통합교육 이론 도입은 남북한 공통의 유아교육과정 정립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섯째,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유아교육과정 통합의 예를 다양화할 필요 있다.

여섯째, 통일 이후, 북한 거주 영유아 대상으로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5. 민주시민교육 기반 교사교육 강화

유아교사의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감수성과 기본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유아교사의 민주시민 역량은 유아교사 양성체계 내의 교과를 운영하는 모든 원리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역량 강화 모델이 필요하다. 교사 양성체계 내의 각과 과목에서 역량 모델을 접목하여 어떻게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삶에서 실천적인 교육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첫째, 교사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사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평화·통일교육 역량 모델 개발과 민주시민교육 학습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교사교육과정을 대면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필수교과로 평화·통일교육을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통합과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자료의 개발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남북한 교사양성 제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교사양성 통합 모델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영유아 교사 간 교류 및 소통 채널 확보하고, 남북한 유아교육·보육의 이질성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북한 교원 간 왕래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섯째, 현직교사들을 위해 통일 후의 역사의 재인식과 통일한국의 가치관과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6. 체제 개편 논의

첫째, 관련 제도와 교육의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국정과제와의 연계의 측면에서 관심 자체가 협소하고 특정 지역 중심의 일회성 행사 형태로 연계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평화·통일교육은 시민사회나 국정과제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주제의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고,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의 통합 및 학제에 관한 중요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의 유아교육·보육제도의 일원화보다 남북한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합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북한 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통합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들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남북한 기관운영 및 학제 비교 연구, 통합 모델 연구, 용어의 통일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유보통합, 학제개편, 무상교육의 범위 논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정책기획당시 국가의제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은 북한을 염두에 두며 장기 플랜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유아,교사, 시민단체, 연구자 포함)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철학과 목표, 교육과정 운영, 교사자격양성체계, 학제, 통합모델, 용어통일, 교재교구 교류 등과 같은 협력 체계 필요, 남북한 어린이 교류, 유치원과 탁아소 방문 및 교류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유아, 교사, 시민단체, 연구자들이 포함된 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부처와 정책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로동신문(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자.
- 박창현, 김나영, 김지수, 최민수, 김정현(2020).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민수(1998). 북한 유아교육론. 서울: 문음사.
- 한만길(2014). 통일 대비 육아지원 방향 및 정책 과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 2014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육아정책연구.

| 주제발표 2 |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

이 윤 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주제발표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¹⁾

이 윤 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

들어가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유례없는 기근 상황에서 어린이—특히, 5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는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이었다(이금순 외 2005; 이윤진, 2012 재인용). 1995년~1996년의 북한의 전체 사망률이 16.8/1,000명이었다면, 영아사망률은 185.6/1,000명, 모성 사망률은 105/100,000명(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2; 이윤진, 2012 재인용)으로, 영아와 임산부들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WFP(세계식량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WHO(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들과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국제기아대책기구, 남북 나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한예수교장로회(이윤진, 2012) 등의 국내 민간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대북 지원 사업에서 ‘영유아 지원 사업’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는 2005년이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국가 장기

1) 본고는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성은 외)에서 수행한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 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의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서 “북한 영유아 지원 제도와 실태”를 집필한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 자원의 공동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통일부 중심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기획, 추진되었던 것이다(이윤진, 2012).

당시, 이러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성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아사망율이 1999년~2000년에 23.5/1,000명, 2000년대 후반에는 14.9/1,000명으로 빠르게 감소하였고, 모성사망률도 같은 기간 동안 100,000명당 103명, 9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외에도 중증 영양실조, 저체중 출산, BCG 접종률 등의 보건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12; 이윤진, 2012 재인용).

북한의 심각한 기근난으로 시작된 북한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 시기에 정점을 찍은 후, MB정부 이후 급감해서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지원과 교류가 중단된 관계로 오늘날 북한 어린이의 건강, 위생, 교육 및 보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18년 UNICEF가 발간한 『2017 DPR Korea MICS』 보고서는 연구자로서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의 건강, 위생, 교육 및 보육 등의 육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7 DPR Korea MICS』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 교류협력 지원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북한의 영유아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해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년, 2016년도 증보판을 고찰하였다. 또한, 북한 영유아 영양, 건강, 보건, 교육 등에 관한 문헌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주민생활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UNICEF가 실시하고 2018년에 발간한 『2017 DPR Korea MICS』²⁾를 분석하였다. 이

2)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는 UNICEF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 정부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생 관련 조사로, 북한에서는 1998년, 2000년, 2009년에 이어 2017년 네 번째로

조사는 조사원이 영유아의 신장과 체중을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홍제환, 2018: 3).

나. 면담조사

김정은 시기(2012년 이후)에 북한에서 자녀를 출산했거나 키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섭외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례수가 적으나, 관련 문헌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면담 자료는 문헌을 보완 또는 생활실태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면담내용은 임신, 출산, 육아,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 실태, 부모님의 양육관과 양육 실제, 북한에서 자녀의 기본 생활시간, 사교육 등이었다. 면담은 2019년 7월, 8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어머니의 기본 인적사항은 다음 <표 1>와 같다. 면담지에 대한 IRB 심의를 마쳤다.

<표 1> 북한 영유아 어머니 기본 사항

사례 번호	출생 연도	출신지역	북한 최종학력	탈북연도 입국연도	북한에서 직업
1	1979년	양강도 농촌	교원대	2016년/ 2016년	소학교 교사, 장사(밀수)
2	1986년	함경북도 도시	고등중학교	2018년/ 2018년	공장노동자, 장사
3	1975년	양강도 도시	사범대학교	2016년/ 2016년	중학교 교사, 장사(밀수)
4	1976년	양강도 도시	전문대학	2017년/ 2018년	판매원(밀수)

아울러 북한에서 공무원과 교사(교양원)을 지낸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해서 김정인 시기의 변화 내지는 강조된 북한 정책, 아동정책, 보육·교양정책 등을 알아보았다(표 2 참조).

실시됨. 북한 전국의 충분한 큰 규모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는 점, 어린이 및 가임기 여성 건강을 비롯하여 민생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는 제공해 준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개도국과의 국제비교가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홍제환, 2018)

〈표 2〉 북한 공무원 인적 상황

사례 번호	출신지역	북한 최종학력	북한 직업	해당직업 경력
1	평안남도	대학교졸	공무원	17년
2	양강도	대학교졸	무용수, 교양원	23년

2

김정은 시기의 북한 육아정책 변화: 법제도 중심으로

1.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의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애육원, 육아원의 근거 법인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되었다. 총 6장 5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2013년 4월 4일자로 제16조(어린이식료품)와 제44조(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의 자격) 두 개 조항이 수정 보충되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6: 223). 수정보충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제16조, 제44조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16조(어린이식료품)에서 종전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는 중요한 문장이 삭제되었다. 대신, “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등장하였다(표 3 참조).

탁아소, 유치원의 식료품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어린이의 보육·교양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양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면제는 곧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실제 북한의 육아가 주로 사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49조에는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식료품의 보장과 더불어 이에 대한 비용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겠다는 의지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김정은 시기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의미심장한 변화라 볼 수 있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보육원과 교양원의 자격조건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조문이 수정보충되었다. 수정보충 전에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또, 전문지식과 해당 자격의 소유가 보육원, 교양원의 자격조건이었다면 이번 개정에는 여기에 덧붙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 만약 건강검진에서 불합격할 경우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사의 건강 측면을 강화하였다(표 3 참조). 요컨대, 영유아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위생안전성 및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보육원, 교양원의 건강을 중시하는 내용을 해당 법조문에 추가 보충함으로써, 탁아소와 유치원의 위생, 청결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표 3〉 어린이보육교양법 일부 조항 개정 전·후

어린이 보육교양법	개정 전(1999년)	개정 후(2013년)
제16조 (어린이식료품)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의 자격)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작동 +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주: 진한 표시가 개정 후, 수정보충된 부분임.

자료: 개정 전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 북한: 법률출판사. p.1068, p.1071.

개정 후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2016). 북한: 법률출판사. p.223.

2. 아동권리보장법

북한은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총 6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이바지”(동법 제1조 아동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1181)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규정한 아동은 16살까지(제2조)로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영유아와 관련된 조문 중심으로 발췌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가정, 탁아소, 유치원과 관련된 조문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북한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 혜택자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아동이 성장하는 가정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제6조, 제38조) 이혼은 하지 말아야(제54조) 하지만, 만약 이혼하면 3세 미만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하도록(제55조)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도 명시하였다(제56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며(제14조) 부모는 아이를 체벌, 구타, 욕설 등의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제43조). 국가의 아동권리보장사업은 내각의 지도 하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으로 전달되어 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통제한다(제57조, 제61조)(이상, 표 4 참조).

법 개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공표하고 바뀐 규정을 비밀문서(대외비)로 작성해서 기관마다 내려보내는데 그 문서를 반드시 회수합니다. 규정에 따라 내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전국에 전달하고 그대로 실천합니다(북한 공무원 사례 1).

〈표 4〉 아동권리보장법 중에서 영유아 관련 일부 조항

장	영유아 관련 법조문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제5조(교육, 보건에서 아동권리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이다.~~ 제6조(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가정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담보이다.~~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 의 아동권리보장	제14조(출생등록)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때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은 해당 거주지의 인민보안기관에서 한다.

장	영유아 관련 법조문
제3장 교육, 보건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22조(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이 더 많이 차려지게 할데 대한 요구)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23조(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3조(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 같은 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34조(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한다~~ 제35조(아동병원, 병동의 배치)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곳에 전문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동병원 또는 아동병동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38조(가정에서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제43조(가정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54조(리혼을 막기 위한 교양) 리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55조(리혼시 아동양육) 부모가 리혼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아래의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56조(아동의 양육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동의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월마다 지불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아동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6장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아동권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61조(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2012). pp.1181-1187.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김정은 정권이 의무교육이 11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되면서, 종전의 법조문에서 “11년제 무료의무교육제도” 문구가 “12년제 무료의무교육제도”로 수정되었다(표 5 참조).

〈표 5〉 아동권리보장법 일부 조항 개정 전·후

아동권리보장법	개정 전(2010년)	개정 후(2014년)
제5조 (교육, 보건분야에서 아동권리보장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 11년제 무료의무교육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더욱 공공발전시켜 모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5조에서 《11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로, 제23조에서 《11년제의무교육》을 《12년제의무교육》으로 수정.
제23조 (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자료: 개정 전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 p.1181, p.1183.

개정 후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2016). p.347.

3. 여성권리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동법 제1조 여성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2: 1188)하기 위해 2010년 12월 22일에 채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9호)되었다. 동법은 총 7장 55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 6〉은 동법에서 임신부, 산모 관련된 조문을 추려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여성의 역할은 가정의 복리와 발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여성은 산전, 산후, 수유 기간 동안 야간노동 금지(제29조, 30조, 제51조), 형벌집행 금지(제38조),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여성은 일일 노동시간을 6시간을 제한하는(제31조) 등의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은 여성에게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제50조)는 조문은 인상적이다.

〈표 6〉 여성권리보장법 중에서 임신부·산모·부모 관련 일부 조항

장	임산부, 산모 관련 법조문
제1장 여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3조(녀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녀성은 가정의 복리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4조(녀성권리보장계획) 국가는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
제4장 로동의 권리	제29조(녀성근로자의 노동보호) ~~녀성은 산전산후기간, 젓먹이는 기간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0조(녀성에게 금지된 노동분야와 직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을 금지된 노동분야와 직종에서 작업시키는 행위, 젓먹이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에게 야간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노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노동자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 지불한다. 제33조(산전산후의 보장)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산전산후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시킬 수 없다.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제38조(건강, 생명의 불가침) ~~ 임신한 녀성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49조(미성년자녀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 녀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0조(출산의 자유)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삼태자, 다태자를 낳아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제51조(임산부에 대한 보호) 녀성이 해산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녀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기의 녀성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제7장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53조(녀성단체의 임무)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녀성동맹조직은 녀성권리보장과 관련한 사회적인식과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54조(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 pp.1188-1194.

동법은 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된 조문은 다음 <표 7>과 같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6: 398). 북한의 육아휴직제도는 산전산후휴가라 하는데 산전 60일, 산후 90일이었다가 최근 산후 180일로 확대되었다. 대신, 종전의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시킬 수 없다”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2절에서 다루겠지만, 북한의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월급이 실질적인 가구소득원이 되지 못하면서 북한 여성들은 산전산후 기간에도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표 7〉 여성권리보장법 일부 조항 개정 전·후

여성권리보장법	개정 전(2010년)	개정 후(2015년)
제33조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시킬 수 없다.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자료: 개정 전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 p.1192.

개정 후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증보판(2016). p.398,

여성권리보장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은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연차별로 수립, 실행하며(제4조) 내각의 지도 하에 해당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도하며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각급 녀성동맹 조직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제53조). 감독통제기관은 해당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제54조).

3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황

1. 건강·영양

가. 모유 수유

북한의 모유 수유 비율은 상당히 높다. 출산 직후의 초유를 먹이는 비율은 99.6%로 대부분 산모가 신생아에게 초유를 먹이고 있다(표 5-6 참조). 초유가 나오지 않으면 액체 형태의 우유(prelacteal feed)을 신생아에게 주는데 이 경우, 분유로 주는 경우는 19.9%이고 나머지 80.1%는 분유가 아닌 액상(Non-milk based liquids)을 제공하고 있었다(UNICEF, 2018: 91).

초유 수유는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초유를 포함한 모유 수유 기간은 16.6개월(중간값)이고 평균값은 17.3개월로 집계되었다. 첫돌이 지나고도 모유 수유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³⁾을 모유와 병행하는 경우가 59.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지역별로 양강도, 평안북도는 병행비율이 34.3%, 3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두 지역의 모유 수유기간이 각각 12.1개월, 15.6개월로 전체 평균보다 짧은데 이는 모유 수유를 일찍 중단하고 이유식 또는 성인 음식을 먹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표 8 참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모유수유 기간이 길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면담사례 모두(부모 면담 사례 1, 2, 3, 4), 둘 정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는 1년 정도 했어요. 분유는 안 먹였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모유 먹여요(부모 면담 사례4).

3) 북한에서는 암죽이라 해서 흰쌀 물로 만든 이유식을 주로 줌.

〈표 8〉 북한 영유아 초유 및 모유수유 실태

(단위: %, 개월)

구분	초유수유 (n=931)	연령별 모유수유(n=911)			모유수유 기간 중간값 (평균값)
		생후 0-5개월 (모유만)	생후 6-23개월 (모유와 이유식)	생후 0-23개월	
전체	99.6	71.4	59.3	61.6	16.6(17.3)
지역					
도시	99.5	70.8	57.5	60.2	16.3
농촌	99.8	72.6	62.0	63.7	17.2
행정구역					
양강도	100.0	(*)	34.3	41.6	12.1
함경북도	98.9	(*)	83.1	84.1	22.6
함경남도	100.0	(*)	66.5	68.4	18.5
강원도	99.0	(*)	58.9	57.6	18.1
자강도	100.0	(55.7)	68.2	64.7	20.0
평안북도	98.9	(*)	37.2	41.9	15.6
평안남도	100.0	(*)	61.6	62.0	17.7
황해북도	99.9	(*)	58.7	66.9	15.0
황해남도	100.0	(*)	56.2	60.3	13.7
평양	100.0	(*)	55.5	56.8	14.4
가구소득					
하위20%	100.0	(68.0)	56.3	58.7	16.1
중간40%	99.5	76.8	59.4	62.1	16.8
상위40%	99.5	69.2	60.7	62.4	16.9

주: () 사례수가 25-49개 미만인 경우

(*) 사례수가 25개 미만인 경우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91, p.94, p.95 표를 재구성.

나. 발달 상태: 신체·언어·정서·사회성·인지발달

북한 영유아의 발육상태를 몸무게, 신장(키), 신장 대비 몸무게 등 3개 영역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경미한 저성장이 19.1%로 가장 높게 나왔고⁴⁾, 경미한 저체

4) 이 수치는 5세 미만 영유아의 만성영양부족의 정도를 뜻한다. 북한은 이 지표에서 1998년 62.3%, 2004년 37.0%, 2009년 32.4%, 2012년 27.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빠르게

중 9.3%, 심각한 저성장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신장 대비 몸무게가 적은 왜소한 경우는 2.5%, 신장 대비 몸무게가 많이 나오는 비만은 2.3%로 앞의 3개 영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영유아의 발육상태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각주 3 참조)을 보여준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영유아들의 신체발달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인 경우 도시 0.6%, 농촌 0.1%로 도시가 6배 많았다. 행정구역으로는 대체로 양강도의 영유아들이 열악하고 평양의 영유아들이 발육상태가 좋았다. 양강도의 영유아들은 심각한 저체중 비율이 4.0%, 심각한 저성장이 1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일수록 발육상태가 안 좋았으며 비만은 상위 40%가구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다(표 9 참조). 면담에서도 북한 영유아들의 발육상태는 가구소득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급 세대와 비교하면 오히려 돈 잘 버는 집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애들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북한 공무원 사례1).

가구소득이 높았던 사례 3, 4의 큰 아이들은 현재 20살로 키가 모두 180cm이다. 그러나 현재 성장하고 있는 유아(사례 2), 초등학생(사례 3) 아이들은 남한 또래 친구에 비해 키가 작다고 한다.

저는 중국에서 키크는 약 사서 먹여서 아들은 180. 딸은 150입니다(부모 면담 사례3).

큰 애는 지금 180이예요. 작은 애가 북한에서는 작은 키가 아닌데 여기서는 너무 작아요(부모 면담 사례4).

우리 딸은 (어린이집 친구들에 비해) 좀 작은 것 같아요. 몸무게는 보통이구요(부모 면담 사례2).

개선되어 왔다(홍제환, 2018: 3). 현재 이 수치는 방글라데시 36.1%, 캄보디아 32.4%, 미얀마 29.4%, 필리핀 33.4% 등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다(홍제환, 2018: 4).

〈표 9〉 북한 영유아 신체발달 실태

(단위: %, 점)

구분	몸무게			신장(키)			신장 대비 몸무게				
	저체중			저성장			왜소		비만		평균 Z 점수
	경미	심각	평균 Z점수	경미	심각	평균 Z점수	경미	심각	경미	심각	
전체	9.3	1.8	-0.7	19.1	4.8	-1.0	2.5	0.5	2.3	0.4	-0.2
지역											
도시	7.6	1.2	-0.6	15.6	3.8	-0.9	1.7	0.4	2.6	0.6	-0.2
농촌	12.6	2.7	-7.7	24.4	6.3	-1.2	3.7	0.7	1.9	0.1	-0.1
행정구역											
양강도	14.8	4.0	-1.0	31.8	10.5	-1.5	4.4	0.9	1.8	0.0	-0.3
함경북도	7.1	1.4	-0.8	21.5	5.3	-1.1	2.2	0.5	1.4	0.0	-0.3
함경남도	11.3	2.2	-0.9	19.4	5.4	-1.1	3.2	0.9	0.9	0.5	-0.4
강원도	10.9	3.0	-0.8	21.4	6.9	-1.1	3.5	0.0	0.9	0.0	-0.2
자강도	11.1	1.7	-0.7	23.0	5.7	-1.2	2.1	0.4	3.0	0.0	-0.0
평안북도	8.5	1.3	-0.7	19.6	4.9	-1.1	1.3	0.0	2.6	0.5	-0.1
평안남도	8.1	1.8	-0.6	19.3	4.1	-1.1	2.2	0.9	3.0	0.9	-0.0
황해북도	11.2	2.5	-1.0	19.2	5.4	-1.2	2.9	0.4	0.4	0.0	-0.4
황해남도	11.3	1.3	-0.7	18.8	5.0	-1.0	3.4	0.4	3.0	0.4	-0.2
평양	4.8	0.9	-0.1	10.1	1.1	-0.3	1.4	0.4	4.2	0.4	0.1
가구소득											
하위20%	12.7	2.5	-0.9	27.0	6.8	-1.3	4.1	0.9	1.6	0.2	-0.3
중간40%	10.2	1.8	-0.8	20.4	5.0	-1.1	2.5	0.2	2.2	0.1	-0.2
상위40%	6.7	1.5	-0.5	13.8	3.6	-0.8	1.7	0.6	2.7	0.7	-0.1

주: 2,270명 영유아를 측정한 결과임.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100.

다. 언어·정서·사회성·인지발달

다음 〈표 10〉은 북한 3~4세 영유아들 대상으로 언어, 신체, 사회성, 인지 등 4개 영역 별)로 10개 문항으로 되어있는 영유아발달도구(ECDI)(UNICEF, 2018: 106)를 사용해서

5) *언어(Literacy-numeracy)영역: 최소 10개 단어를 읽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1부터 10까지 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2개 문항 이상을 맞추면 발달 정상으로 판정.

*신체(Physical)영역: 두 개 손가락으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서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릴 수 있거나 또, 몸이 아프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놀지 않는다면 발달 정상으로 판정.

측정한 결과값이다. 정상발달 범주에 있는 영유아들의 비율을 영역별로 보면, 언어영역이 28.6%로 현저히 낮지만, 나머지 신체, 사회성, 인지 등 3개 영역은 각각 99.7%, 86.4%, 97.7%로 매우 높게 나왔다. 전체 ECDI 점수는 87.7점이다. 농촌보다 도시 지역 영유아들의 정상발달이 더 많았다. ECDI 점수도 도시 88.9점, 농촌 85.9점으로 3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평양의 ECDI 점수는 98.8점으로 평균보다 10점 이상 높았다. 평안북도가 78.0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ECDI 점수도 높았다.

〈표 10〉 북한 3-4세 영유아 언어·신체·사회성·인지 발달

(단위: %, 점, 명)

구분	영역별 정상발달 범주에 있는 영유아 비율				ECDI 점수	3-4세 영유아수
	언어	신체	사회성	인지		
전체	28.6	99.7	86.4	97.7	87.7	914
지역						
도시	29.9	99.7	88.0	98.1	88.9	542
농촌	26.8	99.6	84.2	97.1	85.9	372
행정구역						
양강도	37.5	100.0	91.2	100.0	94.6	28
함경북도	25.5	100.0	70.1	98.9	80.1	90
함경남도	37.2	100.0	88.0	98.9	92.3	120
강원도	26.7	100.0	93.7	100.0	94.8	60
자강도	30.3	97.8	82.8	96.8	84.9	52
평안북도	23.9	100.0	79.1	94.6	78.0	105
평안남도	22.0	100.0	92.3	98.9	91.2	156
황해북도	36.5	99.0	89.6	97.0	90.7	97
황해남도	25.2	99.0	76.7	92.6	72.6	94
평양	29.6	100.0	98.8	100.0	98.8	112
가구소득						
하위20%	28.7	99.1	79.0	95.3	80.9	182
중간40%	26.0	99.8	87.6	97.1	87.9	379
상위40%	31.4	99.7	89.1	99.5	91.0	353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107.

*사회성(Social-emotional): 또래 친구와 잘 지내는지, 친구를 때리거나 물지 않는지, 쉽게 산만해지지 않는지 등 문항에서 2개 이상 맞으면 발달 정상으로 판정.

*인지(Learning): 간단한 지시에 맞게 행동하는지, 주어진 일을 도움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발달 정상으로 판정(UNICEF, 2018: 106).

북한은 도로나 자동차, 버스 등의 운송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걸어서 유치원,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처럼 매일 매일 20~30분씩 걸어서 다니면 신체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체영역에서의 높은 수치는 이러한 환경도 한몫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남한 아이들처럼 자전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걸어요. 유치원도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걸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건강하겠죠. 걷는 걸 힘들어 하지 않아요(부모 면담 사례 3).

2. 보건·위생

가. 예방접종

다음 <표 11>를 보면 북한의 신생아,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상의료제도가 신생아, 영유아들에게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예방접종인 소아마비, 홍역 1차, B형 간염의 접종률은 100%에 가깝다. 표에는 없으나 결핵,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해모필루스 B형 모두 접종률이 99.6%로 보고되었다(UNICEF, 2017: 9). 북한은 전통적으로 보건, 의료분야의 무상치료를 중시해 왔고, 2010년에 제정한 『아동권리보장법』 제33조 무상치료를 받을 아동의 권리에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 항목으로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건소. 진료소에서 철(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령에 따라 주사를 맞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무조건 무상으로 나 줘요. 고난의 행군 때도 기본 예방 접종은 실시했어요(북한 공무원 사례 2).

지역별, 행정구역별, 가구소득별 차이도 눈에 띄지는 않는다. 영유아의 예방접종 만 큼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 예방접종 비율에서 양 강도, 자강도 지역이 90%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낮았고, 전반적으로 하위 20% 가 구소득에서 예방접종률이 다소 낮았다(표 11 참조).

부모 면담조사에서도 아이들의 기본예방접종은 무료라 놓치지 않고 맞을 수 있는데 보건소, 진료소의 의사가 탁아소, 유치원을 방문해서 주사를 놔 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탁아소,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은 제때 필요한 예방접종을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예방접종은 무료예요. 의사들이 탁아소, 유치원, 학교로 나와서 접종을 해 줍니다. 탁아소나,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은 접종을 못 할 수 있습니다(부모 면담 사례 1).

〈표 11〉 북한 영유아 예방접종 실태

(단위: %)

구분	생후 12-23개월				생후 24-35개월	
	소아마비 (Polio)	홍역		B형 간염 (HepB, BCG)	홍역 (Measles)	전체 예방 접종
		Measles 1	Measles 2			
전체	98.9	99.7	77.3	99.6	98.6	97.3
지역						
도시	98.8	100.0	77.7	99.7	99.0	97.6
농촌	99.1	99.3	76.6	99.4	98.0	97.0
행정구역						
양강도	(97.8)	(100.0)	(82.0)	(100.0)	(95.7)	(89.2)
함경북도	(97.7)	(100.0)	(66.7)	(95.6)	(100.0)	(93.1)
함경남도	(97.7)	(100.0)	(75.4)	(100.0)	(97.8)	(95.6)
강원도	(100.0)	(100.0)	(70.2)	(100.0)	(97.9)	(93.2)
자강도	(95.9)	(100.0)	(87.4)	(100.0)	(93.5)	(89.0)
평안북도	(97.8)	(97.9)	(78.0)	(100.0)	(97.8)	(100.0)
평안남도	(100.0)	(100.0)	(88.8)	(100.0)	(100.0)	(100.0)
황해북도	(100.0)	(100.0)	(80.9)	(100.0)	(97.9)	(100.0)
황해남도	(100.0)	(100.0)	(78.2)	(100.0)	(100.0)	(100.0)
평양	(100.0)	(100.0)	(65.4)	(100.0)	(100.0)	(100.0)
가구소득						
하위20%	99.0	98.7	71.5	98.9	96.7	95.1
중간40%	98.0	100.0	81.7	100.0	100.0	97.0
상위40%	99.7	100.0	75.8	99.5	98.2	98.7

주: 소아마비는 3차 접종임(1, 2차 접종 비율은 99.7%임)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9, p.71, p.72 표를 재구성.

나. 위생

1) 영아 배설물

북한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부모면담 사례 모두, 가정 경제력에 따라 기저귀 천의 질이 달라질 뿐이지 모두 천기저귀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UNICEF 조사에서 0~2세 영아들의 배설물처리 장소를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는 일회용 기저귀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질문이라 하겠다.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영아 배설물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UNICEF, 2017: 156). 영아 배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리느냐는 위생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 결과, 배설물을 행구어서(rinsed) 화장실/변기에 버린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행구어서(rinsed) 배수구/도랑에 버린다 18.6%, 아이용 화장실/변기에 버린다 16.1% 순으로 나왔다.

영아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①아이용 화장실/변기, 행구어서 ②화장실/변기 또는 ③배수구 도랑 등 3개 방법이다(UNICEF, 2017: 156). 이러한 위생적 방법으로 가장 최근의 영아 배설물을 처리했다는 응답이 74.2%로 높게 나왔다. 대부분의 주양육자들은 영아 자녀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위생적 방법보다는 쓰레기장에 투척, 땅에 묻는 등의 비위생적 방법으로 영아 배설물을 처리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땅에 묻는다는 응답을 보면 농촌 5.1%(도시 1.6%), 하위20% 6.0%(중간40% 3.6%, 상위40% 0.3%)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았다. 평양에서는 비위생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표 12 참조).

〈표 12〉 북한 영아 배설물 처리 장소

(단위: %, 명)

구분	①아이용 화장실/ 변기	행구에서		쓰레기장 투척	땅에 묻음	방치	기타	가장 최근 영아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한 비율	0-2세 영아수
		②화장실 /변기	③배수구 /도랑						
전체	16.1	58.1	18.6	3.3	2.6	0.7	0.5	74.2	1,361
지역									
도시	19.3	59.3	16.7	2.1	1.6	0.5	0.5	78.6	819
농촌	11.2	56.3	21.5	5.1	5.1	1.2	0.5	67.5	542
행정구역									
양강도	8.9	79.5	4.4	0.0	7.2	0.0	0.0	88.4	43
함경북도	13.7	78.7	6.1	0.0	0.8	0.0	0.8	92.4	131
함경남도	18.0	45.5	17.9	5.0	7.5	3.0	3.0	63.6	177
강원도	25.1	42.3	28.3	1.4	2.8	0.0	0.0	67.5	88
자강도	18.0	61.4	15.0	0.0	5.0	0.0	0.0	79.4	79
평안북도	11.9	51.6	21.0	11.8	0.8	2.9	0.0	63.5	159
평안남도	19.5	50.3	24.1	3.0	3.1	0.0	0.0	69.8	230
황해북도	12.4	63.4	18.6	3.5	2.1	0.0	0.0	75.8	145
황해남도	2.8	55.7	38.0	2.8	0.7	0.0	0.0	58.5	143
평양	25.8	71.2	3.0	0.0	0.0	0.0	0.0	97.0	166
가구소득									
하위20%	11.6	53.3	23.8	3.0	6.0	1.5	1.0	64.8	266
중간40%	15.4	55.9	18.5	5.3	3.5	1.1	0.3	71.3	533
상위40%	18.8	62.5	16.3	1.8	0.3	0.0	0.4	81.4	562

주: 위생적 처리 방법이란 ①, ②, ③임.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156.

2) 식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는 건강과 직결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은 북한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은 더욱 중요하다. 북한은 정수한 수돗물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우물물을 먹는 가정이 절반 이상이다(UNICEF, 2017: 142). 앞서 고찰한 배설물이 식수에 오염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 23.5%의 가구의 식수가 오염된 것(UNICEF, 2017: 147)으로 집계되었다. 도시는 9.7%가 오염된 반면, 농촌은 무려 45.2%의 가구의 식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하위20% 저소득 가정에

서도 45.2%가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UNICEF, 2017: 147).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북한 가정에서 우물을 어떻게 처리해서 식수로 사용하는지 알아본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 영유아들의 식수 위생 상태를 가늠해 보자.

전혀 처리하지 않고(無처리) 그냥 먹는다는 응답이 83.2%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끓여서 먹는다”가 14.2%로 많이 나왔으며 세 번째로 많이 응답한 “물 필터를 사용한다”는 2.4%로 극히 일부에 그쳤다. 적절한 정수방법인 정수약품(water purification tablets)사용은 1.1%에 불과했으며 태양열 소독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적절한 방법으로 물처리를 해서 먹는 가구는 16.5%에 그쳤다. 적절한 물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상위40%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표 13 참조).

요약하면, 식수의 배설물 오염도가 높은 농촌 가정, 저소득 가정에서 정수하지 않은 물을 먹는 가구가 많아서 영유아의 위생 상태는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표 13〉 북한 가정에서 식수 처리 방법

(단위: %, 명)

구분	무 (無)처리	① 끓임	천으로 걸러냄	② 물 필터 사용	③ 태양열 소독	그대로 둠	④ 정수약 품사용	기타	적절한 물처리 방법을 사용한 가구 비율	가구수
전체	83.2	14.2	0.1	2.4	0.0	0.1	1.1	0.2	16.5	32,455
지역										
도시	80.9	15.5	0.1	3.7	0.0	0.1	1.4	0.3	18.7	19,779
농촌	86.7	12.3	0.1	0.5	0.0	0.1	0.6	0.0	13.0	12,675
행정구역										
양강도	70.9	28.0	0.0	1.7	0.0	0.4	2.7	0.0	28.8	1,013
함경북도	81.2	15.3	0.0	2.5	0.0	0.0	1.3	0.0	18.8	3,213
함경남도	79.9	18.7	0.0	1.2	0.0	0.1	0.5	0.0	20.0	4,290
강원도	85.6	14.1	0.0	0.5	0.0	0.0	0.0	0.0	14.4	2,062
자강도	89.8	9.0	0.0	0.2	0.0	0.8	0.3	0.1	9.4	1,826
평안북도	88.7	10.0	0.2	0.9	0.0	0.3	0.6	0.0	11.0	3,799
평안남도	88.0	9.8	0.2	0.7	0.0	0.1	1.7	0.4	11.3	5,545
황해북도	88.9	8.7	0.0	2.5	0.0	0.0	0.1	0.0	11.1	3,294

구분	무 (無)처리	① 끓임	천으로 걸러냄	② 물 필터 사용	③ 태양열 소독	그대로 끓	④ 정수약 품사용	기타	적절한 물처리 방법을 사용한 가구 비율	가구수
황해남도	81.3	16.5	0.2	0.7	0.0	0.1	0.8	0.6	17.8	3,278
평양	72.5	20.1	0.0	10.8	0.0	0.0	2.9	0.4	27.3	4,136
가구소득										
하위20%	85.9	13.5	0.0	0.2	0.0	0.1	0.4	0.2	13.8	6,491
중간40%	86.2	11.9	0.2	1.0	0.0	0.1	0.8	0.1	13.4	12,981
상위40%	78.8	16.9	0.0	4.9	0.0	0.1	1.8	0.3	20.9	12,983

주: 적절한 물 처리 방법이란 ①, ②, ③, ④임.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150.

3. 가정환경

가.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오늘날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휴대전화(스마트폰)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한다. 이는 인터넷망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서 북한의 휴대전화, 인터넷 보급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만화, 어린이프로그램 등의 시청도 하므로 전자제품의 구비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14>를 보면, 북한 가정에는 라디오와 TV는 거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94.1%, 98.2%). 반면, 컴퓨터는 18.7%에 불과했으며 가정 내 인터넷 연결은 1.4%로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영유아들은 인터넷 게임을 남한의 영유아들처럼 흔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의 소지 비율은 성인들(14~49세) 기준으로, 10명 중 7명 정도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69.0%). 집전화기(45.2%)보다 휴대전화(69.0%)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지역별로 라디오, TV는 차이가 없으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차이가 컸다. 도시는 휴대전화를 80.4%가 갖고 있었지만, 농촌은 50.6%만 갖고 있었다. 컴퓨터도 도시 25.2%, 농촌 8.3%로 격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급은 지역, 행정구역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다만, 평양이 5.2%로 유독 높았다. 평양은 휴대전화 90.6%, 컴퓨터 37.7%로 북한 전체 평균보다,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구소득별도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 접근성의 차이가 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ICT를 구비한 비율이 높았다. 부모면담에서도 중국과의 무역(밀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사례 4는 휴대전화를 2대를 가지고 있었다.

저희도 집에 핸드폰이 2개나 있었어요. 아이들도 쥐고(쓰고)(부모면담 사례4).

요컨대, 북한 영유아들은 가정 내 인터넷 보급이 거의 안 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게임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컴퓨터가 있는 가정에서는 카드, 씨디(CD) 등을 통해 아이들도 게임을 즐긴다고 한다.

북한에서 컴퓨터로 게임 많이 했어요. 인터넷은 안 돼도 메모리, 카드, 씨디알로 게임은 해요 (부모 면담 사례1).

〈표 14〉 북한 가정 내 ICT 구비 및 인터넷 사용 정도

(단위: %, 명)

구분	라디오	TV	집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	가구수
전체	94.1	98.2	45.2	69.0	18.7	1.4	8,499
지역							
도시	95.7	98.7	61.9	80.4	25.2	1.8	5,252
농촌	91.7	97.3	18.1	50.6	8.3	0.8	3,247
행정구역							
양강도	89.9	97.8	38.9	59.9	15.9	0.6	262
함경북도	94.0	98.3	54.7	73.3	19.1	0.4	848
함경남도	97.6	98.4	43.2	70.0	15.9	0.4	1,118
강원도	95.1	97.4	35.7	75.6	17.0	1.0	535
자강도	95.0	96.4	39.5	71.6	21.2	3.0	474
평안북도	93.9	98.7	35.9	65.3	12.4	1.7	993
평안남도	92.2	98.2	44.6	67.0	19.1	0.4	1,461
황해북도	94.3	96.8	33.6	55.8	13.3	0.8	852

구분	라디오	TV	집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	가구수
황해남도	89.9	97.9	23.2	52.7	9.5	0.4	835
평양	96.8	100.0	82.6	90.6	37.7	5.2	1,121
가구소득							
하위20%	86.4	95.8	11.7	36.4	39.9	4.6	1,690
중간40%	94.3	97.8	32.3	66.1	72.1	11.0	3,410
상위40%	98.1	99.4	77.3	91.2	96.0	35.0	3,399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31.

나. 동화책·장난감

생애 초기는 뇌발달에 있어 결정적이 시기이므로 뇌발달을 자극하도록 돕는 양육자와 가정에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장난감, 동화책, 그림책, 다양한 놀이감이 구비되어 있는 환경은 중요하다. 다음 표를 통해 북한 영유아들의 관련 실태를 알 수 있다. 가정에 3권 정도의 동화책이 있다는 응답이 50.3%, 10권 이상은 2.3%에 그쳤다. 동화책, 그림책을 갖추고 있는 가정은 북한에서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89.8%). 집에서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서 놀게 한다는 응답은 41.9%로 절반이 채 안 되었다.

도시보다 농촌이 도서, 장난감 구비 정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3권 이상 동화책은 평양이 64.4%로 가장 많고, 양강도가 35.2%로 가장 낮았다. 구매한 장난감 역시, 평양이 97.6%로 가장 많았고, 평안북도가 78.2%로 가장 낮았다. 집에서 만든 장난감, 외부에 있는 생활용품, 2개 이상 유형의 장난감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많이 가지고 노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평양과 같은 도시에서는 장난감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에서는 사기보다는 가정에서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대체해서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동화책 등의 도서와 장난감을 구입하는 가정이 많다. 부모면담에서도 가정 경제력에 따라 구비 정도가 달랐다. 사례 1, 2는 사 준 적이 거의 없었지만, 사례 4는 부족하지 않게 사줬다고 했다.

장난감 1, 2개 정도 사 줬던 것 같아요. 여기 아이처럼 여유롭게 사 주지 못해도 엄마들이 힘들게 벌어서 물총, 축구공 정도는 사 줘요. 그래도 자식인데(부모 면담 사례1).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서적은 보지 않았어요. 동화책이나 그림책도 없었어요(부모 면담 사례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애들한테 장난감, 동화책 많이 사 줬어요.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부모 면담 사례4).

〈표 15〉 북한 가정 내 동화책, 장난감 구비 실태

(단위: %, 명)

구분	도서		다양한 놀이감들				영유아수
	동화책 3권 이상	동화책 10권 이상	집에서 만든 장난감	구매한 장난감	외부에 있는 생활 용품 ⁶⁾	2개 이상 유형의 놀이감	
전체	50.3	2.3	41.9	89.8	39.6	59.4	2,275
지역							
도시	50.5	3.2	40.4	91.6	36.5	56.9	1,361
농촌	43.1	1.0	44.6	87.2	44.1	63.1	914
행정구역							
양강도	35.2	3.1	43.5	86.9	39.6	57.5	71
함경북도	62.1	1.4	52.9	95.5	62.3	76.9	221
함경남도	47.5	1.8	41.3	89.3	43.7	60.2	298
강원도	50.8	0.9	40.9	93.2	29.3	55.8	148
자강도	63.6	3.0	46.3	85.4	32.8	56.3	131
평안북도	40.7	0.5	18.5	78.2	29.1	35.5	264
평안남도	47.9	1.8	47.6	90.1	35.0	67.3	386
황해북도	47.1	2.1	41.3	90.4	52.3	67.8	242
황해남도	40.6	2.9	58.8	89.1	53.1	74.2	237
평양	64.4	6.3	31.9	97.6	19.3	39.9	278
가구소득							
하위20%	43.3	0.8	46.5	87.0	45.7	63.6	448
중간40%	48.2	1.7	42.7	88.9	43.3	62.4	912
상위40%	55.7	3.7	38.8	92.2	32.8	54.3	914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104.

6) 원문은 Household objects/objects found outside임.

다. 아동학대

2010년에 채택된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체벌금지 조항이 명시되었으나, 실생활에서 아동학대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기타 학대(감금, 가학적 행위 등)이 59.2%로 가장 많았고, 신체를 때리는 체벌이 43.2%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꾸지람, 욕과 같은 비폭력적 학대도 36.9%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 중복응답 결과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유형으로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 체벌, 기타 폭력적 학대와 같이 학대 수위가 높은 체벌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더 많이 가해지고 있었다. 영유아만 추려서 봐도 전체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2세 영아에게도 기타 폭력적 학대가 50.7%, 비폭력적 학대 36.9%, 신체 체벌 31.0%로 아동학대가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3~4세의 체벌 비율은 영아보다 더 높았다. 참고로 5세 미만은 주양육자가 응답한 결과이다.

〈표 16〉 북한 가정의 1~4세 아동학대 실태

(단위: %, 명)

구분	비폭력적 학대	신체 체벌	(신체) 체벌 수위		기타 폭력적 학대	1-14세 아동수
			경미	심각		
전체	36.9	43.2	43.4	2.8	59.2	6,449
지역						
도시	38.1	41.3	43.1	3.0	58.3	3,765
농촌	35.3	45.9	43.8	2.4	60.6	2,684
가구소득						
하위20%	35.6	46.7	44.1	4.1	60.5	1,395
중간40%	33.1	47.8	45.1	2.6	63.0	2,554
상위40%	41.6	36.6	41.3	2.2	54.7	2,500
연령						
1-2세	38.7	31.0	41.0	1.3	50.7	908
3-4세	35.9	37.7	53.0	2.9	60.4	914

주: 1) 5세 미만 영유아는 주양육자가 응답하고, 5세 이상 아동은 직접 응답함(UNICEF, 2017: 131).

2) 원자료에는 5-9세, 10-14세 수치가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영유아에 국한해서 제시함.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132.

다음 <표 17>은 북한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신체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집계되었다. 앞서 살펴본 실제 체벌을 하는 응답 비율에 비해서 낮은 수치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가구소득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서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정구역별로는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는 응답이 양강도에서 39.1%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평양은 6.3%로 가장 적었다. 지역 간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북한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신체적 체벌은 필요하다	주양육자수
전체	20.8	4,202
지역		
도시	19.7	2,544
농촌	22.5	1,657
행정구역		
양강도	39.1	130
함경북도	15.1	414
함경남도	24.2	577
강원도	23.5	260
자강도	16.1	243
평안북도	21.7	479
평안남도	24.1	721
황해북도	26.1	411
황해남도	23.8	428
평양	6.3	539
가구소득		
하위20%	23.5	858
중간40%	23.3	1,673
상위40%	16.9	1,670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133.

면담에서도 자녀가 잘못했으면 체벌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4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욕이나 체벌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체벌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 데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안 해요(부모 면담 사례1).

북한 부모들은 아이를 엄격하게 키우죠. 잘못하면 때리죠. 감감할 때까지 밖에 세워놓고(부모 면담 사례3).

북한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잘해요(욕을 잘 해요). 근데 저는 험한 욕은 못 해봤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안 들어봐서 할머니(친정엄마)가 욕을 하면 애들이 인상이 굳어지고 섭섭해 했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만이를 한 번 때렸고 여기 와서 한 번 때렸어요(부모 면담 사례4).

4. 취학 전 보육·교육

가. 기관 이용

북한의 유치원은 2년제(낮은반, 높은반)로 4, 5세 유아가 다니며 탁아소는 그보다 어린 영유아들이 젖먹이기부터 다닐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탁아소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 지원이 거의 끊기면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나 다닐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면담조사에서도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다니지 못하고(사례 1,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사례 3, 4)에서는 다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탁아소는 2년 정도 보내고 이후 친정엄마가 봐 주셨어요. 탁아소 보내니까 꾸리기 사업이라 해서 내라고 조금씩 부담이 떨어져서 그것도 싫어서 안보냈어요. 탁아소 보내려면 계속 도시락 싸야 하고, 천기저귀도 챙겨 보내야 하고. 일회용이 아니어서 다음날 챙겨 보내려면 매일 빨아야 하고....(부모 면담 사례1).

장사는 안 되는데 탁아소는 돈을 내야 해서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탁아소 환경이 청결하지 않아서 보내지 않았어요. 탁아소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탁아소를 다닐려면 매달 7만원 정도는 내야 하는데 제가 공장다니면서 받은 월급이 5만원이에요(부모 면담 사례2).

저희는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고난의 행군 때도 나는 옆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 줄 몰랐어요.……두 애 모두 탁아소, 유치원을 돌 지나면서부터 보냈어요. 도시락도 싸 가아하고, 꾸리기 사업, 화목대를 내야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데라 입히고 신고 먹이는 게 어려운 가정에서는 비교가 되기도 해서 탁아소, 유치원에 애들을 못 보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탁아소 못 보내는 집이 더 많았어요(부모 면담 사례3). 도시락, 기저귀 일체 챙겨서 보내야 했고 선생님은 하루종일 아이들을 그저 돌볼 뿐 이에요. 국을 끓여주는데 그런 부식물비를 냈고 선생님들한테 조금씩 돈을 냈어요. 저희는 잘 살아서 시설이 괜찮은 탁아소를 보냈지만, 못 보내는 집이 많아요(부모 면담 사례4).

다음 <표 18>은 3, 4, 5세 영유아의 기관 이용 현황으로 72.7%가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7명이 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용율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취학 직전 6세 유아들은 거의 대부분(92.6%)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 이는 유치원 높은반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다양한 조사 결과들은 대체로 지역별, 행정구역별, 가구소득별 차이가 있었고 특히, 평양은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수치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탁아소, 유치원의 이용 실태는 이러한 변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의 무상보육·교육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탁아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이 운영되는 원동력은 국가가 아니라 경제력있는 학부모의 후원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북한 공무원 면담 사례 2). 그러나 유치원도 경제력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자녀는 교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받게 되는 구조다(부모 면담 사례 3, 4).

학부모 회의를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어요. 회의에서 부모들한테서 화목비를 받아요. 학부모위원들과 연료 구입을 누가 어디서할 지를 토의를 해요. 유치원 학부모들도 총이

있잖아요(잘 살고 못 사는 집이 있잖아요). 보통 학부모위원장이 제일 많이 내요. 전체 비용에서 절반은 학부모위원장이 내는 거예요. 위원장은 저도(교원도) 먹여 살려야 해요. 배급이 없으니까 선생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학부모위원장이 위원들과 같이 중국돈으로 2,000원 정도 걷어서 줘요. 무조건 걷는 거죠(북한 공무원 면담 사례 2).

선생이 요구하는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내는 애를 더 예뻐해요. 그러니까 더 갔다 바쳐요. 선생이 쪽지에 써 보내요. 00 어머니 제가 지금 어려운데 도와주실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중국돈 200원 정도 줘요. 그 선생한테 제 새끼 맡겨으니까 돈을 주면 그냥 내 새끼 예뻐하니까요. 유치원 공연할 때 앞애다 (내 애를) 세워요. 애들의 위치가 부모가 선생한테 바친 돈의 위치에요(부모 면담 사례3).

같은 학급 엄마들이 모여서 돈을 거둬서 한 달에 얼마씩 선생님한테 드리자 해서 드렸어요(부모 면담 사례4).

한편, <표 18>에서 소학교나 유치원 어디에도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이 2.9%로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그리고 가구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치가 높았다. 의무교육단계라 하지만, 유치원이 실제 학부모의 지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유아들이 교육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큰 애 때(2000년 초)는 유치원은 다 보냈으나 작은 애는 안 보내는 집이 더 많았어요. 유치원 높은 반이 의무교육이라 선생은 부모한테 보내라고 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 보내요. 도시락도 싸야 하고 옷을 갖춰 입혀 보내야 하고 유치원에 내야 할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요. 유치원에서 우리말, 셈세기를 배우는데 소학교에 가면 유치원 다닌 애하고 안 다닌 애하고 확 차이가 나요(부모 면담 사례3).

김정은 시기 이전(큰 아이) 이후(작은 아이)를 유치원을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돈을 더 내게 됐죠. 옛날보다 돈을 더 내야만이 운영이 되니까 못 사는 집은 유치원 못 보내요(부모면담 사례4).

〈표 18〉 북한 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단위: %, 명)

구분	3-5세 유아		6세(소학교 취학 직전) 유아			
	탁아소, 유치원	생후 36-59개월 유아수	유치원	소학교	아무데도 안다님	6세 유아수
전체	73.7	913	92.6	4.5	2.9	450
지역						
도시	72.8	467	94.6	3.3	2.1	283
농촌	72.6	446	90.5	5.8	3.7	166
행정구역						
양강도	64.9	28	(93.7)	(2.1)	(4.2)	15
함경북도	53.3	90	(95.9)	(4.1)	(0.0)	48
함경남도	67.5	119	71.5	20.8	7.6	70
강원도	68.7	60	(92.8)	(0.0)	(7.2)	27
자강도	88.1	52	(92.8)	(4.8)	(2.4)	23
평안북도	77.8	106	(88.7)	(2.2)	(9.0)	52
평안남도	77.8	156	(100.0)	(0.0)	(0.0)	81
황해북도	70.1	97	(100.0)	(0.0)	(0.0)	38
황해남도	76.9	94	(100.0)	(0.0)	(0.0)	42
평양	77.7	112	(97.6)	(2.4)	(0.0)	55
가구소득						
하위20%	75.1	182	91.3	3.9	4.8	95
중간40%	70.4	380	93.1	4.4	2.5	168
상위40%	74.0	351	92.7	4.9	2.3	188

주: () 사례수가 25-49개 미만인 경우

자료: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p.110, p.111. 표를 재구성.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무상교육의무제도는 흔들릴 수 있다. 북한 공무원은 면담에서 아직까지는 북한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제도를 표면상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국가배급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앞서 고찰한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6조의 개정 취지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못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정책은 북한에는 없다. 배급제도, 무상치료, 무상교육 제도를 명문상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없다. 아직까지 제도상 북한은 평등사회이다. 앞으로는 국가배급을 하나씩 하나씩 삭제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 같다. 지금은 과도기라 볼 수 있다(북한 공무원 면담 사례1).

나. 사교육

북한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개인교습 형태의 사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다(박영자 외, 2018: 35). 이들 가정의 사교육은 취학 전부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사례 3, 4는 자녀교육을 위해 일찍부터 사교육을 했고 지역의 최고 학교를 보내기 위해 개인교습(과외)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큰 애는 5살부터 기타를 개인강사한테 배워줬어요. 한 달에 150원(중국돈)씩 내고 배워줬어요. 기타보다 작은 애를 제가 강사 집에 데려다 주고 데려 오고 했어요. 작은 애는 평양 음악무용대학 부속유치원을 혼자 1년 보냈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작은 애는 피아노, 노래를 잘 해요(부모 면담 사례3).

큰 아이가 다닌 수재학교는 북한에서 엄청 센 학교예요. OO시에서 권력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집 자녀들이 다 가요. 아이들의 전망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애들 다 과외시키거든요. 인공 수재들이예요. 머리가 비상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열심히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다 가는 거예요. 저도 큰 애는 엄청 과외를 시켰거든요. 수학, 영어, 아코디언, 소해금 다 과외를 시켰어요. 과목당 한달에 인민폐(중국돈) 100원, 200원씩 냈어요(부모 면담 사례4).

5. 남북한 영유아 기본 생활시간 비교

2017 MICS 보고서에는 북한 영유아의 수면시간, 놀이시간, TV 시청 및 컴퓨터 이용 시간과 같은 일상 기본생활 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다. 양적 데이터의 부재로 남북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비교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남한 영유아의 관련 자료는

『2015 한국아동패널』를 주로 활용하고, 부족하지만, 북한 영유아는 면담조사 내용을 가지고, 비교 정리하고자 한다.

가. 수면

북한 영유아들은 대체로 일찍 일어난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직장을 출근 하면서 탁아소, 유치원에 데려다주는데 도보로 가야 해서 아침 7시 이전에는 기상한다(사례 1, 2, 3, 4). 또한,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북한 영유아들은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에 잔다.

북한에서 아이들은 보통 6시에는 일어나야 해요. 아빠, 엄마가 모두 출근하고 유치원, 학교를 가야 하니까 일찍 일어나요. 잠은 10시, 11시에 자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깐 8시에 자기도 해요(부모 면담 사례4).

이에 비해 남한의 영유아들은 기상 시간이 평균 아침 7시 39분(이정림 외, 2015: 19)으로 북한 아이들과 비교해서 늦게 일어나는 편이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평균 9시 51분으로 북한 아이들보다 조금 늦다. 남한 아이들과 비교해서 북한 영유아들의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 영유아의 수면시간은 서양보다 1시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약 30분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난(한겨레, 2016. 2. 19) 최근 한 연구는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나. 식사

기상 시간이 이르므로 아침 식사시간도 빠르다. 탁아소, 유치원의 등원 시간에 맞춰 아침은 7시쯤 일찍 먹는다. 탁아소, 유치원의 등원 시간은 대개 아침 8시 이후다. 점심은 유치원에서 12시~1시경에 먹으며 저녁은 6시~7시경에 주로 먹었다(사례1, 2, 3, 4). 북한 사람들은 세끼를 다 먹으며 점심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같이 식사한다. 북한은 2015년 이후에는 하루 세끼 식사가 가능해졌으며 고기 섭취도 자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영자 외, 2018: 188).

남한의 영유아들은 아침에 가족과 같이 매일 식사를 하는 비율이 70.7%로 북한에 비해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적은 것으로 짐작된다. 아침 식사를 거의 안 먹는 영유아도 3.6%로 보고되었다(이정림 외, 2015: 93). 점심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1시~12시 경에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7시 경에 먹는 패턴은 북한과 유사하다.

남한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간식을 대개 오전, 오후 2회 정도 제공하지만, 북한의 탁아소, 유치원은 간식 제공이 안 되고 있다. 현재 간식은 일 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 정도에 나오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유치원에서 간식은 일 년에 세 번, 1월 8일(김정은 생일), 2월 16일(김정일 생일), 4월 15일(김일성 생일) 유치원 아이들에게 사탕 같은 먹을 것을 줘요(부모 면담 사례 1).

다. TV, 컴퓨터 이용 시간

앞서 고찰했듯이 북한도 TV 보급은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형편에 따라 전기공급을 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기 같은 기기를 살 만한 형편이 되는 가정에서는 전기를 쓸 수 있고(북한 공무원 면담 사례2, 부모 면담 사례1, 2), 그렇지 못한 가정은 평상시 TV 시청은 거의 못하고 전기가 공급되는 명절같은 특별한 날에 잠깐 시청이 가능하다(부모 면담 사례3). 평상시에 TV를 볼 수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은 체제 보안 등을 이유로 국외와의 인터넷 연결망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집의 전화선은 아직까지 구리로 되어 있는(박영자 외, 2018: 28) 실정이다. 개인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컴퓨터 게임의 제한은 있으나, 북한 영유아 특히, 남자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부모 면담 사례4).

한국 오기 전에 2013년도에 중국산 태양광 발전기를 제가 샀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했어요. 그래도 북한에서 저녁마다 애들한테 불 끄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쓰려면 불을 꺼라 계속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전기 걱정 없고, 도시가스 전자레인지 쓰는 거예요(북한 공무원 면담 사례2).

평일에는 TV를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휴일에는 5시간에서 6시간 봤어요. 컴퓨터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 했어요(부모 면담 사례1).

TV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봤어요(부모 면담 사례2).

북한에서도 남자아이니까 컴퓨터 게임은 많이 했어요. 북한도 최근 게임장(PC방)이 생겼어요. 인터넷은 안 되요(부모 면담 사례4).

이에 비해 남한 영유아들은 TV, 컴퓨터의 접근은 원활한 환경이다. 지난 1주일 동안 TV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이정림 외, 2015: 98)에 불과하다. 요즘에는 남한 영유아들에게 컴퓨터보다는 휴대폰(스마트폰) 게임이 인기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53.1%이며 처음 이용한 시기는 평균 2.27세(이정림, 2014: 1)로 매우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의 영유아들은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할 정도이다. 앞서 고찰했듯이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은 지역별, 소득별 차이가 크고 영유아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휴대폰 게임은 남북 영유아가 경험하는 미디어 문화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격차가 크다고 하겠다.

라. 놀이 및 사교육

북한은 학원이 없고, 사교육도 경제력이 있는 일부 가정에서 하므로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또래와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최근에는 인라인스케이트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어요. 학교에서 오면 저녁에 해질 때까지 놀곤 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많이 놀았죠(부모 면담 사례1).

동네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았어요.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배드민턴도 치고. 저녁에 나와서 인라인 타는 아이들이 새까맣게 많아요(부모 면담 사례4).

2016년 조사(김은영 외, 2016)에서 2세 영아의 35.5%, 5세 유아의 83.5%가 사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와서도 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또래와 노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남북한 부모들 모두 자식 교육열은 매우 강렬하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북한도 교육을 통한 성공 욕구가 강하다. 북한 학부모들이 탁아소, 유치원에 교사에게 돈을 내는 이유가 “내 아이를 잘 봐 달라고”이다. 다만, 남한은 사교육을 통해 남보다 앞선 교육으로 성공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북한은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북한에서도 일부 가정에서는 개인교습 등의 과외가 성행하지만, 남한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돈 있는 사람이 과외를 하지만 한국처럼 이 정도 선행하지 안 해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뛰어 놀게 하고 수업시간에 딱 수업하고, 과외는 과외대로 하고. 그거는 북한이 (남한보다) 좋은 거 같아요. 애들한테 활력소가 주어지죠(북한 공무원 면담 사례2).

4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지금까지 김정은 시기의 영유아 관련된 제도와 실태를 법령, 건강·영양, 보건·위생, 가정 내 육아환경, 탁아소·유치원, 사교육, 남북 영유아 기본생활시간 등을 고찰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진적인 법들이 제정되고, 노인,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양소, 애육원, 육아원을 각 도마다 설립하는(북한 공무원 면담 사례 1) 등의 애민정치를 실시하였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난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도는 붕괴되고 있었다. 북한에서 배급이나 월급이 실질적인 가구소득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장사, 밀수 등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흥부

자계급인 “돈주”가 부상하였다. 배급제도는 붕괴되고, 돈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면서 이전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육아도 개인의 책임이 돼버렸다. 자본력이 없는 개인, 가정에서의 육아 문제는 경제난 이전에 비해 나빠졌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아동정책, 육아정책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실상은 이전보다 더 나빠졌어요(북한 공무원 면담 사례 2).

김정은 시기 들어서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요. 없는 놈은 진짜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놈은 더 부를 축적하고……생활이 향상된 집에서는 유모차, 오토바이를 끌었어요(부모 면담 사례 3).

김정은 시기의 영유아 제도와 실태는 이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에서 변화한 북한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영유아의 예방접종률, 만성영양부족, 모성사망률 등의 수치는 많이 개선되었다. 북한이 김일성 시기부터 실시해 온 무상의료제도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극복하고 잘 작동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탁아소, 유치원을 통한 무상보육·교양제도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보육교양법』제16조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문구를 삭제한 개정은 주목해야 하겠다. 탁아소, 유치원에 국가가 제공하는 급식, 간식이 끊기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중단됨). 교양원, 보육원들의 월급도 몇몇 부유한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서 주는 상황이다.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전 배급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국가배급정책을 점차 하나씩 삭제할 것이라는 북한 공무원 면담내용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남북 영유아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이러한 사회변화, 정책변화를 읽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를 예측하면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클 것이다

2. 남북 영유아 교류협력방안

가. 인도적 지원

의약품, 이불, 옷, 인라인스케이트와 같은 물품은 인도적 지원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현재와 같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2000년대 초중반) 추진했던 남한의 직접 지원이 있다.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대상자와 지역을 명확하게 정하고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에 물품을 지원할 때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영유아들에게 분유를 지원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분유를 타야 하는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없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일회용 기저귀 지원도 쓰레기 처리시설이 미비한 북한에서는 시기상조다.

나. 개발협력사업(ODA)

북한은 전기, 수도, 난방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TV를 제대로 시청할 수 없으며 냉장고, 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품을 비싸게 샀지만 쓸 수가 없어서 옷장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면담에서 나왔다(부모 면담 사례3). 전기, 난방, 수도 등은 북한 영유아의 건강·영양, 보건, 위생 문제와 직결된다. 수도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염된 우물을 그냥 먹는 아이들이 83.2%에 이른다. 남북한 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격차가 존재하는 한, 동등한 관계로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한계가 있을 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적 물품 지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개발협력사업(ODA)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발협력사업은 다년 간 남북이 인적, 물적 왕래가 이루어지므로 인도적 지원보다는 선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1석 2조, 3조 그 이상의 교류협력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북한과의 개발협력사

업은 남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2000년대 중반 무렵에 이미 추진된 바 있다. 남한의 NGO단체, 학계 전문가 등 민간부문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되었다. 개발협력사업이 재개된다면 이미 노하우가 있는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 영유아의 기본생활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을 제안한다. 향후 MICS 질문지에 관련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남북 연구자가 함께 문항을 개발하고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표 19>는 이 장의 주요 연구결과와 교류협력방안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9〉 북한 영유아 교류협력방안 분야별 추진방안

분야	북한 영유아 실태	교류협력방안
건강·영양	모유수유 - 모유수유 비율 99.6%	- 모유수유를 못하는 산모를 위한 분유 지원 * 분유는 끓은 물이 필요하므로 전기, 난방 시설 설치
	발육상태 - 만성영양부족 19.1%	- 취약지역, 저소득 가정에 의약품 지원
	임신·출산 - 모성사망률도 개선됨(파상풍 면역 84.1%) - 병원 출산 시, 이불, 옷, 음식, 땀감 등을 가지고 가야 함.	- 모성사망률 zero를 위한 취약지역, 저소득가정에 의약품 지원 - 산원에 물품 지원
위생	영유아 배설물 처리 - 땅에 묻거나 투척하는 등 비위생적 방법	-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 * 쓰레기 소각시설이 미비하므로 일회용기 저귀 지원은 지양
	식수 - 농촌 식수 오염 가구 45.2% - 우물을 아무 처리하지 않고 먹는 비율 83.2%	- 수도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정환경	컴퓨터, 인터넷 보급 - 남한 영유아에 비해 컴퓨터, 휴대전화 사용이 매우 낮음. - 인터넷 보급률 1.4%	- 취약지역, 저소득가정에 컴퓨터 지원 - 남북 영유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을 개발 보급 * 전기공급 기반시설 설치
	동화책, 장남감 - 가정에 3권 이상 도서 구비 50.3%, 10권 이상 2.3%	- 취약지역, 저소득가정에 동화책, 장난감, 인라이스케이트 지원
	아동학대 - 정책적으로 아동권리를 강조하나, 가정에서는 체벌이 자주 일어남. 신체체벌 43.2%	- 남북이 함께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캠페인 운동 추진

분야		북한 영유아 실태	교류협력방안	
보육·교육	탁아소, 유치원	- 탁아소, 유치원에 다니려면 도시락을 싸 가야 하며 땔감비(화목대)를 내야 함.	- 탁아소, 유치원에 직접 식량, 옷 등 지원 - 탁아소, 유치원의 전기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수면	- 북한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기상함.		
남북영유아 기본생활시간	식사	- 북한 아이들은 점심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같이 식사함. - 탁아소, 유치원에서 간식 미제공	- 탁아소, 유치원에 직접 우유, 빵과 같은 간식 지원	향후 MICS 질문지에 북한 영유아의 기본생활시간을 알 수 있는 문항을 추가
	ICT 이용 등 놀이	- 남한 영유아들은 스마트폰 이용률이 53.7%이나, 북한 영유아는 거의 접하지 못함. -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TV 시청이 수월하지 않음.	- 전기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참고문헌

- 김은영·최효미·최지은·장미경(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13
- 박영자·조정아·홍제환·정은이·정은미·이석기·전영선·강호제(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통일연구원.
- 북한법연구(2012). 10. 북한녀성권리보장법. 북한법연구회. pp.412-418.
- 이운진(2012).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추진방안.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점검 및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협의회.
-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3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12). 북한: 법률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2016). 북한: 법률출판사.
-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
<https://namu.wiki/w/%EB%B6%81%ED%95%9C%EC%9D%98%202009%EB%85%84%20%ED%99%94%ED%8F%90%EA%B0%9C%ED%98%81> 에서
2019년 8월 26일 인출
- 조성은·고혜진·송철중·유민상·이운진·이준우·조영주·정지웅·김혜슬·조보배(2019). 남 북한 복지분야의 정책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37.
- 홍제환(2018. 7. 19). UNICEF 조사 결과로 본 북한 민생 실태.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1-6.
- UNICEF(2018). 2017 DPR Korea MICS.
〈신문기사〉
- 한겨레(2016. 2. 19). 한국 영유아 수면시간, 서양 아이들보다 1시간 부족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1166.html#csidx1b06288902a15e3bcf4e5dfba5d8eb2>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1166.html#csidxdcbe2d2ef5ce687912053077c13de> 에서 인출(2019년 8월 30일)

| 토 론 |

최 민 수 이사장 (코리아통합연구원)

박 태 준 평화교육담당사무관 (경기도교육청)

조 성 은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 혜 경 사무총장 (어린이어깨동무)

‘미래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최민수 이사장 (코리아통합연구원)

1 남북한 학제 비교

남북한 학제 비교는 한만길(2012). “통일대비 교육통합 방안 연구”를 위한 델파이 조사(1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현재 상황에 적절하게 본 토론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함

[그림 1] 남북한 학제 비교

고등교육	대학원 (석사 2~3, 박사 2~3)			28 27 26 25 24 23	박사원		고등교육					
								일반대학(4~6) 교육대학(4)	전문대학 (2~4)	일반대학 (4~6)	단과대학 교원대학 (3~4)	전문학교 (2~3)
	중등교육	고등학교(3)			17 16 15 14 13 12	12년의무교육	고급중학교(3)	중등교육				
									중학교(3)	초급중학교(3)		
초등교육		초등학교(6)		9 10 8 7 6 5		소학교(5)	초등교육					
	학교 전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3년	4 3 2 1 0	유치원	높은반(1) 낮은반(1)	학교 전 교육				
									탁아소			
남한			연령	북한								

2

북한의 보육원 및 교양원 양성

북한의 탁아소에 근무하는 보육원의 양성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중앙의 보육전문학교, 지방의 고등전문학교, 공장 및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학교, 통신교육체제에 의해서 양성된다. 보육원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 지방행정기관,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관장한다. 보육원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과목으로는 보육학, 위생학, 생리학, 영양학, 아동심리학 등이다.

북한의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양원 양성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근거하여 전국 22개 교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교양원학과, 도·시·군에 설치된 1년제 교양원양성소, 통신교육체제에 의해서 양성한다. 유치원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지방행정기관,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관장한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1년제 교양원양성소는 유치원 교양원에 대한 교사수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통신교육체제는 1년제 교양원양성소에서 유치원 교양원을 배출한 경우 주로 학기 중에 TV방송으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원대학교에 나가서 집체교육으로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는 곳은 전국 22개의 3년제 교원대학 유치원 교양원학과이다.

교원대학 유치원 교양원학과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으로는 정치사상 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사상 관련 학과목으로는 김일성 혁명역사, 김일성 로작, 김정일 혁명역사, 김정일 로작, 백두산3대장군 어린시절, 군사훈련 등이다. 둘째, 전공교과목으로는 교육학, 교육심리학, 외국어(영어, 로어), 컴퓨터교육, 국문강독, 문화어(우리말 문법),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체육, 어린이위생학, 체육교수법, 도화공작교수법, 음악교수법, 쉼세기교수법, 무용(유치원 노래와 춤동작), 여학생 실습(음식요리, 봉제), 자연관찰, 교육실습 등이다(최민수, 1996; 이윤진, 2014).

통일통합교사 양성 방안

통일통합교사의 양성의 기본방향은 유아통일통합교사, 초등통일통합교사, 중등통일통합교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사’ 명칭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교육부의 인정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되는 통일통합교사 양성방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첫째, 언제일지 모르지만 각 학교급별 통일통합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국가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참고할 수 기초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국가에서 통일통합교육 ‘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이전에 상당한 정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통합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향후 국가에서 공인하는 통일통합교사를 양성하게 될 때 여기에서 취득한 민간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호환되어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지닌 통일통합교사 전문가 자격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일통합교사 양성방안

유아통일통합교사는 현재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복수자격증 개념으로 양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통일통합교과목 12학점을 이수하면 유아통일통합교사 정교사(2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표-1은 유아통일통합교사(2급) 양성방안을 위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통일통합교사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통일통합교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첫째, 교직학점 이수학점을 위해서는 교직이론 교과목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을 취득하고, 교직소양 교과목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교직소양 교과목 4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전공과목과 이수학점으로는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21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셋째, 통일통합교육 과목과 이수학점으로는 통일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 통합교육영역 6학점(3과목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유아통일통합 전문가(2급) 자격증 제도로 운영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사항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유아통일통합 전문가(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향후 국가자격증 제도가 확립될 때 그대로 호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규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통일통합교과 교과목을 12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유아통일통합 전문가(3급)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지만 향후 국가자격증으로 호환되는 경우에 22학점 이상의 교직과정을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국가자격증으로 호환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표 1〉 유아통일통합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전공, 통일통합 교과목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전공과목과 이수학점		통일통합교육 과목과 이수학점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 과목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론, 영유아발달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론,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론, 유아안전교육	통일교육영역 (6학점 3과목 이상)	- 북한이해교육 - 통일통합교육론 - 민족공동체교육 - 통일통합방법론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 교직실무 (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기타 교과교육론	통합교육영역 (6학점 3과목 이상)	- 문화공동체론 - 평화교육론 - 민주시민교육 - 통일통합멘토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P/F)	전공필수, 전공선택 (2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과목		
합계	총 22학점 이상	총 50학점 이상		총 12학점 이상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전공과목과 이수학점	통일통합교육 과목과 이수학점
평균성적 통과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통일통합교육 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필수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수료해야 함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본 자료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 2016)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최민수(2016). 통일통합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방안 모색. 한국통일교육학회, 국민대학교 통일통합교육센터 공동주체(2016.5.20.) 자료집에서 발췌.

3

통일국민협약

통일국민협약에 대해서는 하상섭(2018). 한국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북한학보, 43(2). 논문에서 발췌하여 제시함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은 정권이념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응집력을 분산시켰으며 정권 교체 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통일 정책 분야의 사회협약인 ‘통일국민협약’은 남남갈등 이완, 대북·통일 정책의 정쟁(政爭)화 방지, 지속적 대북·통일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책성과 향상, 국민결집력 상승으로 인한 대외협상력 강화와 같은 효과들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의 부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통일 분야에서의 사회적 합의 추진으로 인한 성과 도출의 불확실성,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 해 줄 합의제 정치 문화 및 제도 부재 등은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국민협약’에 과연 보수·진보·중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통일국민협약’ 체결 이후 정부의 실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점 또한 존재한다.

제시된 극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국민협약 참가자들에게 사회협약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정치권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남남갈등 이완 등의

기대효과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타협·협리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양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

한국의 통일국민협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는 신봉철(2017).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한국 교육계에 주는 시사점. 통일교육연구, 14(2). 한국통일교육학회. 논문에서 발췌하여 제시함.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소도시인 보이텔스바흐에서 열린 정치교육 학술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을 말한다. 이 회의의 주제는 당시 좌우 진영 간의 정치적 논란이 치열했던 가운데 정치 수업 내에서 논쟁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정치교육은 학생의 자율적인 판단능력, 비판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합의가 지금까지 독일 정치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 저변에 깔린 정치교육의 일반적 상식을 재확인하고 공식화한 것이다. 즉, 이 합의의 내용은 독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것이다. 이 합의 내용 자체가 우리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이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조항

첫째, 교화 또는 주입을 금지한다. 가르치는 사람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교화와 정치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학문적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쟁적인 사안은 그것을 가르치는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사항은 앞의 사항과 연결되는 것으로, 수업에서 상이한 입장들이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정치교육이 결국 교화나 주입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다양한 입장을 다루고 이해시켜야 한다.

셋째,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자신의 이익 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그들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파악하고, 그 관심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개별적인 정치적 해결능력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방법에 대한 합의이다. 특히 논쟁적인 문제에서 교사의 중립적 입장과 학생의 자율적인 판단을 도와야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했을 뿐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단순히 교수학습 원칙이 아닌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집약되어 표현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사회구성원들의 다원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에 있어서 내용 선택이나 방법 면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의 수업 뿐 아니라 독일의 정치문화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토 론

미래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보완 필요성과 유아교육과정에서의 평화·통일교육과 시민교육

박 태 준 평화교육담당사무관 (경기도교육청)

□ 들어가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70여 년이 넘어서는 분단 자체가 고질화된 우리 사회에서 평화·통일교육을 미래세대 유아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성, 교육과정, 교사교육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 연구는 매우 긴요하며,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또한, 북한의 현황을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제한된 여건과 자료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황과 제도를 비교함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연구는 자못 의의가 크다고 판단됨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박창현외, 2020) 중,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미래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대안으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보완과 유아교육과정에서의 평화·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 유아교육과정 평화·통일교육과 관련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필요성

-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제시된 의견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일대비 교육, 평화·통일교육과 관련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미래세대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초·중등교육과 연계된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함에도 누리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이와 관련 개선대안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됨

-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통일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통일교육지원법은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과 관계된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음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제1항에서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역시 유아교육과정은 배제되어 있음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수행되는 국립통일교육원의 학교 통일교육지원 교육과정,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 체험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 연구학교 운영 등 사업 대상에서 유아교육과정은 배제되어 있으며, 매년 5월 넷째 주에 실시되는 통일교육주간 대상에도 빠져있음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와 관련 교육부의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서도 유치원은 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책적 논의 및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통일교육지원법 개선 대안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안으로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제2항 6호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통일교육을 명시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의 과정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임

이를 위해서 관련 연구 활성화가 학계는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아교육과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계획이 전면 확장이 필요함. 또한, 평화·통일교육 연구·시범 유아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생성하고,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자료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함.

- 이와 관련 최근 변화는 국립통일교육원이 교원연수와 관련 유치원 교원을 대상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통일교육원 또한 유아교육과정의 평화·통일교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임
-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용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를 발행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용 지도서를 보급하고, 관련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있음

유/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시민교과서를 토대로 성장발달단계에 맞는 워크북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동영상 교육자료,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작 안내하고 있음

또한,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한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 2023년 준공예정인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 평화·통일 전문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실을 구축하는 등 유아교육과정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 평화·통일교육은 분단 시대 한반도 내의 특수한 목표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의 보편성에 기반하여야 함. 그런 의미에서 균형 있는 북한관, 건전한 안보의식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공존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 생명과 비폭력 존중, 협동과 신뢰, 개방과 관용, 사회적 책임과 같은 시민성을 함양해야 하며, 이러한 시민성을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어갈 수 있음.
- 국립통일교육원 2018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에서 기존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함양, 한반도 통일에서 평화를 우선 가치로 제시한 바 있음
- 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 교육과정의 평화시민, 민주시민, 세계시민 3종 시민교육 교과서를 통한 시민성교육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세대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시민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의 단계로 평화 감수성을 키워내는 시민성 함양교육으로 유아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다만, 더불어 함께 미래의 평화에 대해 말하고 그 희망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토 론

대북제재와 북한 아동 지원 및 교류협력의 전망

조 성 은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의 어두운 전망

최근 북한은 대외적으로 정상국가로 인식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의 인권 관련 협약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 내 서베이 자료 등을 생산하여 보고하고 있다. 북한 아동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들이 이러한 협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북한 아동의 생활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UNICEF의 MICS는 향후 북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진적인 법들을 제정하고, 노인,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양소, 애육원, 육아원을 각 도마다 설립하는 등의 이른 바 애민정치를 실시하는 외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제난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도는 붕괴되고 있었다. 북한에서 배급이나 월급이 실질적인 가구소득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장사, 밀수 등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흥부자계급인 ‘돈주’가 부상하였다. 배급제도는 붕괴되고, 돈을 가진 자

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면서 이전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육아와 노인부양의 문제도 개인의 책임이 돼 버렸다. 자본력이 없는 개인, 가정에서의 육아와 노인부양의 문제는 경제난 이전에 비해 나빠졌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시장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 당국의 지원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표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탁아소, 유치원을 통한 무상보육·교양제도의 균열이 발생하여 최근에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6조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문구를 삭제한 것에서 실태를 엿볼 수 있다. 탁아소, 유치원에 국가가 제공하는 급식, 간식이 끊긴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교양원, 보육원들의 월급도 몇몇 부유한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서 주는 상황이다.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은 이전 배급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국가배급정책을 점차 하나씩 삭제할 것이라는 북한 공무원 면담 내용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능력의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생활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전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유엔 제재, 미국의 행정제재 등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둔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역시 이러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현재 제재 국면에서 인적 교류를 제외한 물자의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 역시 실익이 없는 교류협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2

대북 제재 국면에서의 교류협력의 가능성

1. 대북제재 현황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의 고착 상태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변화를 볼 때 개혁·개방의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 4.)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의 완

성을 선언하였고,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집권 후 2013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박봉주 내각총리를 중용한 것이 갖는 경제 변화의 의미에 주목하기도 한다(최장호, 최유정, 김범환, 김미림, 2019). 박봉주 전 내각총리는 북한 역사상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받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후속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과거 북한 경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의 중용이 북한 체제의 개혁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건설 강조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부분적인 시장경제제도 도입, 장기적으로는 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이 북한의 경제체제 및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유엔 제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북한 경제 일반을 겨냥한 포괄적 제재로 변한 2016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2017, 2018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수입·수출이 대부분 봉쇄되면서 새로운 물자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수호, 2018).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뿐 아니라 미국의 행정제재 역시 강력한 효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 무역 통로가 공식적으로는 거의 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은 UNSCR 2321호에서 ‘민생 목적’ 등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효과를 높인 이후 2371호(2017. 8. 5.)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자원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375호(2017. 9. 11.)에서는 식물 및 의류 완제품 수입도 금지했으며, 2397호(2017. 12. 22.)에서는 식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북한의 수출 길이 대부분이 막혔다(임소정, 2018). 북한으로의 연료 수출 역시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현재 원유는 민생용에 한정하여 매년 400만 배럴 이하, 석유 제품은 민생용에 한정하여 매년 50만 배럴 이하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북한 핵과 관련된 UNSCR는 총 10차례였으며, 그중 2016년 이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주요 항목은 광물, 원유, 작물, 의류, 금융, 해외노동 분야 등이다.

〈표 1〉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제재안	UNSCR 2270 (2016. 3. 2.)	UNSCR 2321 (2016. 11. 30.)	UNSCR 2371 (2017. 8. 5.)	UNSCR 2375 (2017. 9. 11.)	UNSCR 2397 (2017. 12. 22.)
대북 수출입 금지 현황	- WMD와 관련된 무연탄 및 철·철광석 금지(단 민생 목적 제외)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금지 - 항공유 수출 금지(단 인도주의적 용도 및 북한 민항기 해외 급유 제외)	- 북한산 무연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중 작은 쪽 선택 - 은, 동, 아연, 니켈 금지	- 북한산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전면 금지	- 북한산 식물 및 의류 완제품 전면 금지 - 정제유 200만 배럴 - 원유 400만 배럴(LNG, 콘덴세이트 전면금지)	- 북한산 식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 선박 수입 금지 - 원유 금지(단 민생 목적 허용, 연간 400만 배럴) - 정제유 금지(단 민생 목적 허용, 연간 50만배럴)
대북 사업 금지 현황	- 북한행·발 화물 전수조사 - 북한 은행 해외 지점 개설 금지	- 회원국의 북한 내 금융기관 폐쇄 및 무역 금융지원 금지 - 북한인 수화물 및 화물 검색 의무화 - 북한 국적 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보험 제공 금지	- 해외 노동자 현 수준 동결 - 북한과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 금지 - 제재위가 제재선박 지정 후 회원국은 입항 불허 -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불가	- 해외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북한과 합작사업 전면 금지(120일 이내 폐쇄) -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화물 이송 금지	-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어획권 구입 금지 -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의무화

자료: 임소정, (2018).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KIEP 기초자료 18-01), pp. 5-6; 남북 교류협력지원협회. (2018).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4.0(남북협회 2018-2), pp. 12-13 참조.

여기에 미국은 포괄적 방식의 행정 제재로서 미국의 인력, 물품, 기술, 재화 등은 모두 북한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국 물품에 미국 기술, 원료가 포함되어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조치를 위반한 기업, 단체와 거래하는 기업, 단체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물품의 거래뿐 아니라 금융, 유통 등에 걸쳐 제재 대상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다만, 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에서는 인도주의적 면제(humanitarian exemption) 절차를 활용할 경우 승인된 물품의 교류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본다.

2. 인도주의적 면제의 활용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국가에 제재조치를 취하지만, 대상국 주민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여 왔다. 유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 전반에 타격을 가하여 무분별한 피해를 초래하는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 방식 대신 특정한 개인·단체·부문·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 방식을 사용”하고, “둘째 제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셋째로 “인도주의적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도경옥, 2018, p.2). 특히 북한이 포괄적 제재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면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핵심 과정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어 “2018년 8월 6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면제 관련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Obtaining Exemptions to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채택”한 바 있다(도경옥, 2018, p.1). 또 2019년 12월에는 대북제제 면제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제재 면제 심사 신청 후 5~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대표부가 VOA(Voice of America)에 답한 바 있다(박수윤, 2019).

이렇게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2018년 총 17건이었던 제재 면제 승인은 2019년에는 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Heusgen, 2019). 2018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면제 요청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경옥, 2018, p.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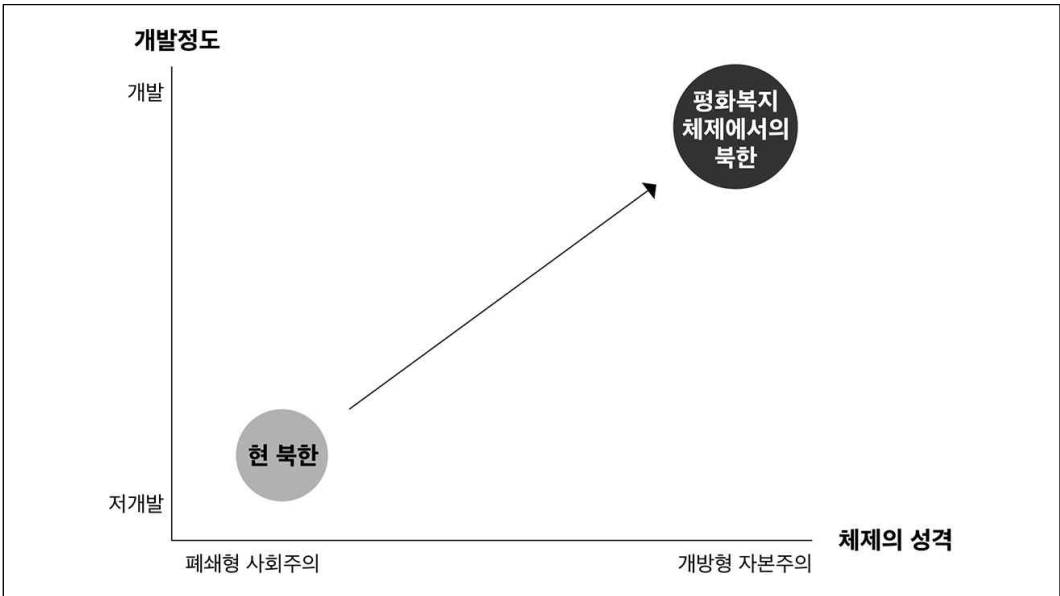
어두운 상황에서도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

해방 이후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분단체제는 남북한 모두에게 불필요한 이념 대립과 군비 투자에 역량을 소모하게 만들어 번영과 사회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인적 자원의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전술로 택한 핵 개발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는 동시에 유엔재제로 인해 북한의 고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분단체제는 장기적인 번영에 큰 걸림돌이 된다.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강제된 분단체제는 남한사회에서 반공주의를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주체세력으로서 노동자를 약화시켰다. 여기에 막대한 군비 지출은 복지 확대에 투여할 재원의 압박을 가져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나선 것은 이렇게 분단체제가 남북 모두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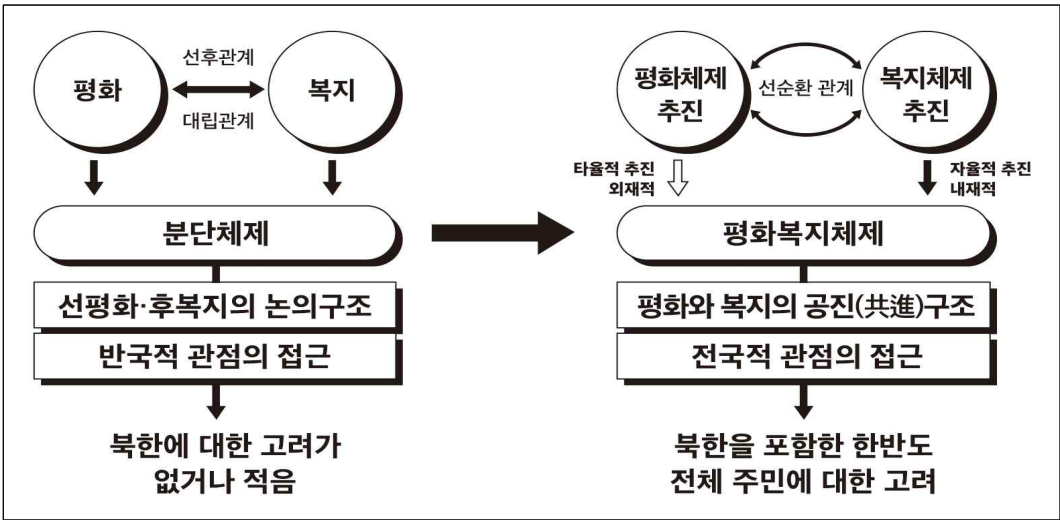
특히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이는 한반도의 미래 인적자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발표자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장기 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 자원의 공동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한반도 전역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분단체제에서 불필요하게 소모했던 남북의 역량을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여해서 궁극적인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림 1] 북한 사회 변화의 이상향



[그림 2] 분단체제와 평화복지체제의 비교



토 론

북한 어린이 생활환경 실태와 현황 및 지원방안 토론편

최 혜 경 사무총장 (어린이어깨동무)

- 본 발표는 김정은 시기에 영유아의 건강·영양, 보건·위생, 가정 내 육아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흐름과 변화, 현재의 실태 등을 자세하게 설명,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토론자가 대북지원, 교류협력 현장 활동가이기에 발표자가 제안한 ‘남북 영유아 교류협력 방안’ 부분에 집중하여 토론을 하고자 함.
- 토론 구성은 1) 김정은 시대 이후 특히 조선로동당 8차 대회 이후 북측의 공식 입장 변화, 2) (2016년 이후로 한정하여) 교류협력 현장에서 북측과 협의하면서 느낀 남북협력에 대한 북측의 입장 변화, 3) 향후 대북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내용,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겠음.

1

김정은 시대 새로운 전략

1. 김정은 초기

새로운 노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 -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추진 방법	과학기술을 통한 지식경제 창조(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강조) 자력갱생
실행방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립

2. 조선로동당 8차 대회

- 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 실패 인정
- ② 변화된 정세와 새로운 요구에 기초해서 올바른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 제시하면서 향후 5년간 북한의 대내, 대외 전략 제시
- ③ 새로운 전략의 주요 내용
 - 가. 인민대중제일주의 공식화 : 김정은 시대 정치 이념으로 등장
 - 나.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
 - :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 균형 회복
 - : 현실성, 과학성, 동원성에 기초한 경제 계획 수립
 - : 대외경제부문보다 대내 경제 부문에 주력(대북 제재)
 - 다. 대외관계 원칙 발표 :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대남, 대미 관계 설정

※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운영·집행되는 세부 전략, 사업은 없음. 분야별 교류협력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 변화 파악 필요

2

남북협력에 대한 북측의 입장 변화

1. 남북관계 설정 변화 : 일방적 ×, 공리공영, Win-Win

-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발표자가 북한 영유아 교류협력방안으로 제안한 특정 분야 지원과 위생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은 향후 남북협력에서 단독 사업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가능성 높음.
- 해당 문제해결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 지구적 문제이자 공동의 문제인 기후변화 측면, SDGs 이행 측면으로 전략적으로 접근

2. 기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남북관계

- 민족의 특수성 vs 1/N

3. 과학기술협력 강조

- : 제재 상황에도 추진 가능한 분야로 판단
- :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 미래 대비를 위한 과학기술협력

4. 인민경제 자립화, 각자도생(지역별, 분야별 특수성 인정 가능)

5. 국제기준, 보편성 강조

6. 남북협력사업 분야

- ①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경제협력방식, 사회적 경제방식의 협력사업
- ② 지원 요청 방향 변화
 - 가. 은나는 사업 vs 전국단위 지원 사업

- 나. 단위 사업 as 개인수익보장을 위한 사업 구상
- 다. 시스템 구축

3

향후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고려사항

1. ① 일방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입장 변화,
② 남북에게 모두 혜택이 가는 협력, ③ 공동의 문제 해결 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추진 전략 개발 필요

2. SDG's 이행

① 남측

- SDGs 등 국제적 기준에 준한 인도개발협력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요구,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요청
- 남북 간 직접 사업 추진이 실제 사업성과 외 남북통합 기여 등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으나, 직접 사업이 남북한 정치 상황, 국제질서 영향에 따라 부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북한이 국제연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 국제협력을 통한 추진 고려 필요

② 북측

- 북한 외무성과 유엔북한팀이 2016년 '유엔북한협력전략 2017-2021' 서명 : 사실상의 SDGs의 주요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 최근 북측의 정책설명 방향 변화 - 자신들의 정책이 국제규범, 국제기준에 부합 혹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
- MDGs에 비해 SDGs는 전 지구적 목표임으로 북측의 특수성, 열악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보편성, 협력, 연대의 틀로 사업을 설명할 수 강점이 있음.

③ UN의 SDGs 목표와 북측의 SDGs목표(서술방식, 사용 단어 등) 비교를 통한 북측의 사업 추진 방향

가. UN의 SDGs 목표와 북측의 SDGs 목표가 차이가 있는 항목 비교¹⁾

	UN 목표	북한 목표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북한 인민의 삶의 수준 향상
목표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식량의 자급자족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	모든 인민의 지능을 갖춘 노동자로 역량강화
목표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자생할 수 있고 지식기반의 경제 구축과 모든 인민을 위한 일자리 보장
목표 9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주체사상에 기반 한 현대적이고 IT와 과학기술에 기반 한 국가 경제 건설
목표 10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모든 인민의 지위와 역할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제고
목표 11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보다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조건과 환경 조성
목표 14	육상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	지속가능한 숲 관리, 토지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
목표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사회주의 체제 강화

나. 북한 SDGs목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영양·보건 분야 북한의 입장

- SDGs 이행 관련 2019년 북측 발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문제를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식량자급> 세부 내용에 서술

1) Nam Sangmin, 「SDGs Implementation in DPRK」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2015-16 Oct. 2019)를 기초로 토론자 재구성

- 김정은 체제에서 식량문제 해결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최우선 과제로 평가
- 대북개발협력사업 구상 시
 - : 영양·보건 사업을 인민생활향상, 농업개발협력사업의 틀로 구성
 - : 영양개선 사업의 경우 인민생활 향상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분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까지 고려한 사업 구상 필요

3. 기후변화 측면으로 접근

- ① 기후변화는 어린이들의 건강권, 생존권과 직결
- ② 기존 사업을 기후변화 측면으로 재구조화
 - △ 보건의료사업을 예로 들자면
 - 의료시설에 기상관측소 설치
 - : 기후변화 측면에서 보면 강수량, 습도, 온도, 풍속만 알면 감염병 예측 가능
 - : 감염성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예방과 사전 조치 사업으로 전환 가능
 - 재생에너지 개발활용도 확대 : 의료시설의 태양열 패널 설치

4. 그러나 북한의 '지향'과 '현실'과는 간극 존재

Needs를 반영,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개발 필요

[illegible]

 2021 육아정책 심포지엄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